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214-11

www.mois.go.kr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2019. 11



행정안전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00-000214-11

www.mois.go.kr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2019. 11

차 례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5
1. 광역행정 총론	6
1) 광역행정의 의의	6
2) 광역행정의 연혁	7
3) 광역행정 관련 제도	7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11
1) 협력사업	11
2) 사무위탁	16
3) 행정협의회	22
4) 지방자치단체조합	39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49
1. 갈등관리 제도	50
1) 공공갈등 정의와 갈등관리 제도 근거 규정	50
2) 갈등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52
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55
2. 분쟁조정 제도	57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58
2)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72
3)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102

Ⅲ. 참고자료	109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협력·분쟁조정 규정	110
2. 사무위탁 협약체결서, 관리조례 (예시)	123
3.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31
4. 행정협의회 협약 (예시)	134
5. 지방자치단체조합 협약(예시)	137
6. 지방자치단체조합 폐지 협약(예시)	147
7. 조합해산 신고서(예시)	148
8.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149
9. 위원회 조정 신청서	155
10.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159
11.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165
1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167
12-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73
13. 국내·외 각종 분쟁조정 관련 제도	177
14. 민간 관련 분쟁조정 제도 및 갈등관리 기관	189

PART I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1. 광역행정 총론
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1. 광역행정 총론

01 광역행정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 관할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 발생하는 특정한 행정수요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사무처리 영향권 내에 있는 인접 또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수행체제와 방식
- 「광역행정」이라는 용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바 없으나, 광역자치단체·대도시 행정 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 광역자치단체간, 광역·기초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 상호협력에 의한 행정수행체계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

❖ 성 격

- 지방분권에 대한 협력 기제로서 역할 수행
 - 지방분권과 협력은 반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로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행정주체간 연결고리로서 협력도 강화
- 특정한 행정수요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 구현 가능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행정수요에 대해 공동 협력하여 지방행정과 행정서비스의 형평적·능률적 배분
- 지방자치단체 기능·사무의 재배분
 - 기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처리 곤란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공동처리 등을 통해 기능·사무배분 활동수행

02 광역행정의 연혁 (광역행정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일 자	주 요 내 용
1988. 4.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198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 하나 또는 둘이상의 사무로 명확화
1999. 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설립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등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 공동문제 협의
2011. 7.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의견 제출권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폐지가 필요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의무화)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03 광역행정 관련 제도

협력제도

구 분	운 영 목 적	관련규정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 사무처리의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력	『지방자치법』 제147조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위탁·처리	『지방자치법』 제151조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지방자치단체 조합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 처리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제164조

지방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 개 념

-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의 의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

❖ 연 혁

- '99. 8.31,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신설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 '11. 7.14,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 등 협의체 의견 제출권 신설
 -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폐지가 필요한 경우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의무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2항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2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 ② 제1항 각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 및 국정 참여

❖ 협의체의 설립 및 변경 신고

- (설립신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신고
 - 설립취지, 협의체의 명칭, 협의체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첨부
- (변경신고) 협의체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

❖ 협의체 등의 의견제출 및 처리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이하 “협의체”)와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이하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결과를 협의체 및 연합체에 통보
 - ※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으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 타당성이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협의체나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3) 운영 현황('19. 9월 기준)

명칭(설립)	임원진	사무처	임기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99. 1. 23 결성, '00. 3. 18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 장 : 대구광역시(권영진, 자) • 부회장(2) - 세종(이춘희, 민), 제주(원희룡, 무) • 감 사(1) : 인천(박남춘,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장 : 전성환 • 정 원 : 60명 • 주 소 (☎ 02-2170-6022) -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6, 15층(서소문동, 동화빌딩) 	'19. 7. 24. ~ '20. 6. 30.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99. 9. 18 결성, '00. 4. 26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회장 : 경기 수원시(염태영, 민) • 상임부회장(1) : 충남 논산시(황명선, 민) • 부회장(6) * 부회장 3 추가 선임 예정 - 울산 동구(정천석, 민), 전남 담양군(최형식, 민), 경북 문경시(고윤환, 자) • 감 사(2) - 인천 계양구(박형우, 민) - 충북 청주시(한범덕, 민) • 대변인(1) : 광주 북구청(문 인,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총장 : 제종길 • 정 원 : 26명 • 주 소 (☎ 02-790-0861)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 902호 (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19. 7. 1. ~ '20. 6. 30.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00. 6. 28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 장 : 서울특별시(신원철, 민) • 수석부회장(1) - 대구(배지숙, 자) • 부회장(4) - 인천(이용범, 민), 세종(서금택, 민), 전북(송성환, 민), 경남(김지수, 민) • 감 사(2) - 부산(박인영, 민), 제주(김태석, 민) • 사무총장(1) : 대전(김종천, 민) • 정책위원장(1) : 울산(황세영,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 : 주윤중 • 정 원 : 16명 • 주 소 (☎ 02-6263-0969)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14층 (여의도동, KT여의도타워) 	'19. 8. 20. ~ '20. 6. 30.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 ('00. 4. 12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 장 : 전남 영광군(강필구, 민) • 수석부회장(1) : 울산 중구(신성봉, 민) • 부회장(9) - 부산 해운대구(이명원, 민), 대구 중구(오상석, 자), 인천 동구(송광식, 민), 광주 서구(강기석, 민), 경기 성남시(박문성, 민), 강원 춘천시(이원규, 민), 충북 청주시(하재성, 민), 전북 전주시(박병술, 민), 경북 포항시(서재원, 자) • 감 사(2) - 대전 유성구(하경옥, 민) - 경남 창원시(이찬호, 자) • 사무총장(1) - 서울 강서구(김병진, 민) • 대변인(1) - 충남 논산시(김진호, 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처장 : 도일환 • 정 원 : 8명 • 주 소 (☎ 02-3444-5910)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512 로가디스빌딩 501호 	'18. 9. 18. ~ '20. 6. 30.



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01 협력사업

1) 개요

❖ 개념

-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

❖ 연혁 및 근거

- (연 혁) '88. 4. 6,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47조

지방자치법 제1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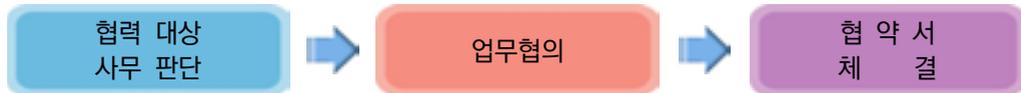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유형

- 지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용역, 박람회 개최, 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 설명회 등 다양

2) 절차별 추진 내용

〈추진절차〉



1. 협력 대상사무 판단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지역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

2. 업무협약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공동처리 또는 협의·조정·승인·지원 등 요청
- 진행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 비용부담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 금액, 집행방법 등 논의

3. 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지방자치단체간 MOU 체결, 공문서 발송 등

참고 1 . 2019 신규 협력사업(각 지자체 제출자료 참고)

업 무 명	관련기관	협력내용 및 효과
'혁신로드'를 통한 상호정책 연구/ 교류	서울, 경북	▸ 정책우수사례 공유
「대구-경산-영천」 광역 환승 시스템 구축사업	경산, 대구, 영천	▸ 대구-경산-영천간 대중교통 광역무료환승 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및 지역 상생발전
거창 승강기 벨리를활용한 세계승강기허브도시조성사업	거창, 합천, 경남(소방본부)	▸ 승강기 안전체험관 구축 및 운영 ▸ 합천 국민안전체험관(승강기안전체험관)과 거창 승강기벨리 연계관광 프로그램 운영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구성	경기도, 화성, 평택, 오산, 이천, 안성, 여주	▸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대응
경북 동해안 빅데이터 구축 및 공유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고객의 니즈에 맞는 관광 동해안 조성 및 관광객 유치
경북동해안 대표 문화 콘텐츠 교류공연 추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시·군민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제공
교외선운행재개및복선전철화 사업	경기도, 양주, 고양, 의정부	▸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 ▸ 사업시행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귀농희망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울, 경북	▸ 도시민 농촌 유치 홍보 및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농촌 인구 유입
김포시-인천서구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경기 김포, 인천 서구	▸ 양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과 정보 공유 ▸ 양 도시 공동 발전방안 모색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서울, 경북	▸ 지역 농식품의 홍보를 통한 이미지 극대화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승	대구, 경산, 영천	▸ 대구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 간 교류확대와 공동생활권 형성
동해·삼척지역공동화장시설건립	동해, 삼척	▸ 동해시 화장장 이전·신축 추진 ▸ 동해·삼척 시민편의 증진
문화관광 상생 콘텐츠 발굴 및 공동마케팅 추진	서울, 경북	▸ 문화예술단체 교류 및 관광 콘텐츠 공동 발굴 등

업 무 명	관련기관	협력내용 및 효과
사회적경제 통합아카데미 운영	인천 부평구, 연수구, 미추홀구, 동구	▸ 인천시 4개구 통합 아카데미 운영으로 과정별 참여율 제고 및 예산절감
상주 감꽃마을 서울캠핑장 조성	상주, 서울	▸ 폐교를 활용한 도시민 초청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 등 다양한 농촌체험
상주 서울농장 운영지원	상주, 서울	▸ 귀농귀촌 교육과 도농교류 체험의 플랫폼으로서의 서울 농장을 운영
서울관광재단-경상북도문화관광사 제휴 협력	서울, 경북	▸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협업사업 추진
신(新)북방경제협력사업 공동추진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신(新)북방시대에 따른 동해안 5개시군 상생(경제·해양·관광 등) 협력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안동시-송파구 도농 상생 공공급식 지원 업무협약	안동, 송파	▸ 직거래로 산지 농산물을 송파구 공공급식 시설에 공급 ▸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친환경 식자재 공급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건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신고제 요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육정포천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경기도, 양주, 포천	▸ 육정포천선 광역철도의 신속한 추진
우리마을 1cm문화센터 사업	함안, 창원, 경남	▸ 행정구역을 벗어나 양 지자체(함안군 칠원읍-창원시 내서읍) 간 협업하여 공유할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양 지역 주민들 간 교류증진으로 소통과 화합을 도모
잠수어업인 진료비지원사업지침개정건의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지침을 개정하여 개인 진료 횟수 및 진료비 한도 기준 마련
지역상생청년일자리 사업(고용형)	서울, 경북	▸ 서울거주 청년대상 지역기업 근로경험 지원
지역상생청년일자리 사업(창업형)	서울, 경북	▸ 청년 유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의 좋은일자리 만들기	거제, 통영, 고성	▸ 공동기업유치 ▸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 컨설팅 시행
지진방재 및 공동대응단 운영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공동대응체계 구축으로 방재역량 강화

업 무 명	관련기관	협력내용 및 효과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 협약	진천,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 선별시설을 진천군, 음성군이 광역시설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중복투자 비용 절감
충북 증부4군 공동발전을 위한 공유도시 협약	괴산, 증평, 진천,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생활권인 증부4군 지역의 한정된 자원과 자산을 공동 활용하여 발전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서울,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친환경농산물 서울시 학교급식 확대 공급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
통영·거제·고성 공동관광마케팅추진	통영, 거제, 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보 교환 및 홍보관 공동이용 ▶ 관광자원 공동 활용으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관광마케팅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폐교활용 서울시민 자연체험 시설 조성	서울,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폐교활용 숙박형 자연체험시설 조성·운영
하남시-신안군 자매도시 협약	하남, 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 및 독서문화 교류 등 청소년 중심 교류 ▶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힐링장소 제공 등 시민편익 증진 ▶ 체육·문화·관광·경제·행정 등 상호협력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포럼	포항, 경주,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창업 기업들의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02 사무위탁

1) 개요

❖ 개념

-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

❖ 연혁 및 근거

- (연 혁) '88. 4. 6,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5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절차별 추진 내용



1. 협의

-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위탁 관련 협의
 -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경비의 부담 방법 등
-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대상 사무 판단
 -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이용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인지 여부

대상사무 예시

-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등 환경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이 가능한 분야
- 환경보전, 수질개선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용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분야 등

2. 규약제정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 사무가 위탁된 경우,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 위탁사무의 관리·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시) III-2
사무위탁
협약체결서,
관리조례(123p.)

3. 고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규약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지방자치단체 공보 발행 규정(조례·규칙·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보(시·도보, 시·군·구보)에 게재
- 사무위탁 규약을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와 협의를 거쳐 고시

I. 광역행정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4. 보고

- 사무위탁 처리가 결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당사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 사무위탁 규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3) 운영현황 ('19.9.30. 기준)

연번	업 무 명	관련기관		연도	위탁내용 및 효과
		위탁	수탁		
1	하 수 처 리	남양주시	구 리 시	'89	포천지역에서 시작되는 왕숙천 유역의 하수를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2	하 수 도 사 용 료 부 과 징 수 사 무 위 탁	울 산	양 산 시	'99	울산시가 관할구역인 웅상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사무를 양산시에 위탁
3	안 양 하 수 종 말 처 리 장 위 탁 운 영	군 포 시 의 왕 시	안 양 시	"98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근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통합처리
4	총 청 소 방 학 교 소 방 공 무 원 연 려 훈 령	대 전 세 종 총 북	충 남	'99	충남소방학교를 충청소방 학교로 개칭하고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 3개 시·도는 운영비를 공동부담
5	웅상지역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사무 위탁	울 산	양 산 시	'99	양산시 웅상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무를 양산시에 수탁
6	마 산 광 역 상 수 도 (칠 서 정 수 장) 공 동 사 용	함 안 군	창 원 시	'00	함안군 생활용수 일부를 창원 칠서정수장에서 공급
7	창 녕 군 상 수 도 공 급 협 약	창 녕 군	대 구	'00	대구인접지역의 경우 대구상수관로 인입 후 사용 수도요금 지급
8	쓰 레 기 소 각 장 사 용	의 왕 시	과 천 시	'00	의왕시의 가연성쓰레기를 과천소각장에 반입 처리하여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과천시) 및 쓰레기 운반 처리비 절감(의왕시)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 영	남양주시 구 리 시	남양주시 구 리 시	'00	쓰레기매립장(남양주)과 쓰레기소각장(구리)을 양 시에 각각 설치, 상호 보완 사용하여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및 예산 절감
10	쓰 레 기 위 생 처 리 시 설 광 역 화	김 포 시	파 주 시	'00	파주시와 김포시의 쓰레기를 파주시에서 건설중인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통합 소각 및 매립처리
11	하 수 처 리	가 평 군	남양주시	'01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양주시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연번	업 무 명	관련기관		연도	위탁내용 및 효과
		위탁	수탁		
12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보전 대책 협약	울 산 시 밀 양 시 창 념 군	양 산 시	'01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구역 관리,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밀양댐 저수지 및 상류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수질보전
13	하 수 공 동 처 리	서 울	부 천 시	'04	구로구 향동지역 발생하수(1,252톤/일)를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장으로 위탁처리
14	점 촌 · 함 창 하 수 처 리	상 주 시	문 경 시	'07	함창읍의 하수를 인접한 문경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처리비용을 부담,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시설비, 운영비 등)
15	소 방 공 무 원 교 육 훈 련	세 종	충 남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반업무로 인력비용 절감
16	보 건 · 환 경 검 사 업 무	세 종 충 남	충 북	'12	보건·환경 관련 시험, 검사로 인력, 비용 절감
17	지 방 공 무 원 교 육 훈 련	세 종	충 남	'12	공무원 교육훈련 제반 업무 위탁, 비용 절감
18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세 종	충 남	'13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출제로 인력비용 절감
19	생 활 폐 기 물 광 역 화 사 업	강릉시, 삼척시	태 백	'13	강릉·삼척시 생활폐기물 태백시에 위탁 처리
20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지역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협약	양 산 시	울 산 시	'16.	양산시 하수처리구역관할인 울주군 이천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사무를 울산광역시에 수탁
21	공 동 화 장 시 설 건 립	횡 성 군 여 주 군	원 주 시	'16.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화장시설 추진
22	강원남부권 5개 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 사업	삼 척 시 동 해 시 영 월 군 정 선 군	태 백 시	'16.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로 안정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민원최소화, 재정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연번	업 무 명	관련기관		연도	위탁내용 및 효과
		위탁	수탁		
23	함창상수도정수공급	상주시	문경시	'16.	문경시의 여유분의 정수를 인근 함창읍으로 공급하고, 사용료를 지급(시설비, 운영비 절감)
24	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협약	관악구	구로구	'17	▸ 고용복지원스톱서비스
25	환경기초시설위탁처리	가평군	양평군	'17	▸ 가평군 하수슬러지 (50톤/일) 수탁 ▸ 시설용량 40톤/일으로 2개 시·군(양평군, 가평군) 경제성 제고
26	군포환경관리소용역	의왕시	군포시	'17	▸ 의왕시의 가연성 생활 쓰레기를 군포시 소각장에 반입 처리하여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쓰레기처리비 절감
27	복지업무에탁관한	청송군	안동시	'17	▸ 안동시고용복지+센터에서 청송군 주민의 맞춤형 복지 상담을 위한 사무위탁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03 행정협의회

1) 개요

❖ 개념

-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
-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법인이 아님)

❖ 연혁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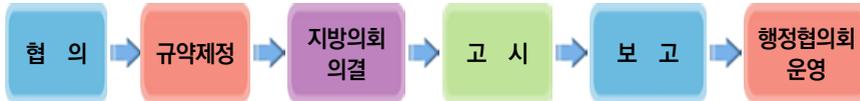
- (연 혁) '88. 4. 6,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규칙) III-3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131p.)

2) 절차별 추진 내용



1. 협의

- 특정 사무의 일부 공동처리를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 처리사무, 경비의 부담 방법, 기타 협의회 운영 사항 등 포함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한 사무 추진여부 판단

- 사무의 일부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무인지 여부
- 협의회 구성을 통한 행·재정업무의 조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사무인지 여부
- 행정정보의 상호 공유가 필요한 사무인지 여부

2. 규약제정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협의회 명칭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협의회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그 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예시) III-4
행정협의회 규약
(134p.)

3. 지방의회 의결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작성한 규약을 각 지방의회 의결절차 이행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결 즉시 그 결과(의회의 의결의안 이송 공문을 첨부)를 중심자치단체에 통보
-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절차 이행

4. 고시

-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지방자치단체 공보 발행 규정(조례·규칙·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보(시·도보, 시·군·구보)에 게재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시결과(공보사본 첨부)를 중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고시절차 이행

5. 보고

- (구성현황) 행정협의회 중심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자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
 - 협의회 명칭, 가입 지방자치단체명, 구성목적, 구성일자, 협의회 규약 사본 등
 - * 중심 지방자치단체 :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
- (회의개최) 행정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
-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할 경우 행정안전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

양식) III-3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133p.)

6. 운영

❖ 조직 구성

- 1인의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 회장과 위원은 협의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를 총괄
 -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 대행자를 선임
- 협의회 사무소는 중심 지방자치단체*에 둠
 - *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

❖ 회의 개최

- 회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 임시회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시 회장이 소집
- 회장은 회의가 있는 때마다 협의회 의안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리 배포하고, 회의록을 작성
 - ※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의회 개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는,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자부장관이, 시·군·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가 개최를 권고
-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개진,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구

❖ 자문위원

-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

❖ 협의사항의 조정

- 협의회에서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 요청 가능
 - 시·도간 협의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간 협의사항은 시·도지사가 조정(단,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
-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지방자치법」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

❖ 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 효력

-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결정사항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무를 처리
 - ※ 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으로 시행
- 협의회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와의 관계는 대리관계 하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가 이행한 것으로 봄

3) 운영 현황('19. 9. 30. 기준)

- 총괄 : 92개 행정협의회(권역별 38개, 기능별 54개)
- 권역별 협의회 : 38개(광역권 4, 기초권 34)
 - 광역 :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호남권 정책협의회, 중부권 정책협의회
 - 기초 : 경기중부권 행정협의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등
- 기능별 협의회 : 54개(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등)

참고 1 . 행정협의회 현황 ('19. 9월말 기준 지자체 취합)

❖ 총 괄

('19.9월말 기준)

구 분	계	권역별		기능별
		광역권	기초권	
누 계	92	9	29	54

❖ 권역별

1. 광역권 행정협의회 (9개)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합계		29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1989. 3.27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1993.09.25.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 서구, 강화군
충청권행정협의회	1995.03.03.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서천군·군산시 행정협의회	1997.08.01.	군산시, 서천군
호남권 정책협의회	2004.12.1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G14 대전충청광역권 공동발전협의회	2007.5.3.	대전(5개 자치구 포함), 충북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충남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	2015.10. 1.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전남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중부권정책협의회	2016. 6.21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전북
동해남부권해오름동맹상생협의회	2017. 7.27.	울산, 포항, 경주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2. 기초지역권 행정협의회(29개)

협의회명	구성일	참여 자치단체
합계		29개
서울		1개
동북4구 행정협의회	2016. 4. 19.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경기		5개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1981.08.28.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경기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1995.10.18.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구리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1996.06.28.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동북부생활권행정협의회	2014.02.11.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경원축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2014.1.28.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강원		3개
설악권 행정협의회	1975.03.18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백두대간행정협력	2008.06.16.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한탄강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2016.04.15.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충남		1개
환황해권 행정협의회	2015. 6. 16.	서산시, 보령시,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전북		3개
무진장 행복생활권협의회	2014.01.17.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전라북도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2015.04.17.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순남행복생활권행정협의회	2015.05.01.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남		11개
여수순천광양시행정협의회	1986.05.01.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1996.12.24.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협의회명	구성일	참여 자치단체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1998. 12. 1.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1999.03.11.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2011.05.03.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전남중부 행복생활권협의회	2014.03.24.	나주시, 화순군
전남동부생활권협의회	2014.05.09.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	2014.07.18.	강진군, 장흥군, 영암군
서북지역행복 생활권협의회	2014.08.05.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구곡담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2014.12.02.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득량만권 장보고행정협의회	2016.09.08.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경북		4개
삼도봉생활권 협의회	2014. 3. 4	김천, 무주, 영동
포항-경주행정협의회	2015. 2.12	경주, 포항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	2015.11.24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
경상북도 중·서부권 행정협의회	2017. 3.27	김천, 구미,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성주, 칠곡
경남		1개
거제-통영-고성 행정협의회	2018.12.17.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 기능별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남해안시도광역관광 협의회	1994.8.25	제주, 부산, 경남, 전남
더불어함께하는 도시협의회	1997.09.30.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공주시, 전주시, 제주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1997.12.26.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남원시, 남해군, 순창군, 순천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하동군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 행정협의회	1998. 9. 5.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1999. 4. 29.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부천시, 시흥시, 의왕시
수도권관광 진흥협의회	1999.01.27.	충북,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동남권관광협의회	2001. 7.	부산, 울산, 경남
장수벨트행정협의회	2003.02.06.	순창군, 곡성군, 담양군, 구례군
전국동주도시 교류협의회	2003.06.24.	제주시, 광주시, 파주시, 양주시, 여주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공주시, 전주시, 나주시, 경주시, 영주시, 상주시, 진주시
전북 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2003.10.20.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2003. 4.13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양,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2004. 1.30.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2004. 9.10.	관악구, 양천구, 성북구, 영등포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금천구, 송파구, 서대문구,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용산구,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부산남구, 사하구, 부산서구, 금정구, 기장군, 부산 동구, 달서구, 대구 동구, 수성구, 대구 북구, 연수구, 부평구, 인천 남구,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울주군, 울산 중구,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울산북구, 울산동구, 광명시, 부천시, 이천시, 수원시, 구리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남양주시, 포천시, 군포시, 의정부시, 김포시, 성남시, 화성시, 양주시, 의왕시, 가평군, 고양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영월군, 삼척시, 화천군, 강릉시, 횡성군, 동해시, 평창군, 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청주시, 제천시, 단양군,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증평군, 충주시, 금산군, 부여군,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서천군, 천안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논산시, 공주시, 진안군,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순천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 영암군, 담양군, 화순군, 고흥군, 안동시, 칠곡군, 경산시, 구미시, 포항시, 경주시, 영주시, 청도군, 김천시, 거창군, 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양산시, 하동군, 진주시, 통영시, 창원군, 합천군, 함안군, 제주시, 서귀포시
남부권관광협의회	2004.01.24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2004.03.04.	부산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
전국고추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2004.07.06.	영월군,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태안군, 임실군, 고창군, 해남군,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2004.3.30	대전 · 세종 · 충남 · 충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2005. 6.28	영주, 안동, 의성, 청송, 문경, 봉화, 상주, 포항, 예천, 군위, 영천, 영덕, 영양, 김천, 경주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2005.6.3	대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 상주시, 의령군, 함양군, 창녕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함안군, 하동군, 고성군, 김해시,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구례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진안군, 완주군, 창원시
서부경남관광 진흥협의회	2005.9.8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06.09.14.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동작구, 중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구로구, 종로구, 강동구, 종량구, 용산구, 관악구, 동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강북구, 서초구, 은평구, 노원구, 마포구, 광진구,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장군, 대구수성구, 인천연수구, 미추홀구,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유성구,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성남시, 양주시,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원주시, 양구군, 속초시,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울진군, 경주시, 군위군,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경산시, 포항시, 상주시, 울진군, 경주시, 군위군,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제주특별자치도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2006.12.15.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원주시, 진천군, 음성군, 전주시, 완주군, 나주시, 김천시, 진주시, 제주도 서귀포시
호수문화관광권 광역관광협의회	2007.11.27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2008.04.28.	인천 강화군,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2010.11.29.	서울 종로구, 성북구, 인천 강화군, 수원시, 광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고창군, 화순군, 경주시, 안동시, 합천군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2010.12.20	태백시,삼척시,영월군, 정선군
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	2011.01.03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전국덤프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11.11.10.	대전대덕구, 춘천시, 횡성군, 화천군, 충주시, 보령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순천시, 광양시, 장흥군, 안동시, 영천시, 청도군, 진주시, 밀양시, 합천군, 군위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012. 11. 7.	구로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인천남동, 안산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포천시, 천안시, 아산시, 광산구, 김해시
경부선 지하화 추진 행정협의회	2012. 12. 21.	안양시, 금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군포시, 용산구
대한민국아름다운섬 발전협의회	2012.03.15.	인천 옹진군, 강화군, 여주시, 보령군,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남해군
전국농어촌 지역군수협의회	2012.11.2	인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릉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2013. 3. 20.	서울 성동구,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강동구, 인천 남구, 부평구,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주시, 완주군, 여주시, 담양군, 해남군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	2013. 7. 9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서천군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2013.01.10.	익산시, 논산시, 서천군, 부여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2013.03.20.	서울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인천 남구, 부평구,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전주시, 완주군, 여주시, 담양군, 해남군
국내관광 선도 도시간 관광교류협의회	2015. 3.12.	대구 중구, 목포, 강진, 청송, 청도, 고령, 합천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2015. 9. 2.	서울 성북구, 인천 남구, 울산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안산시, 이천시, 가평군, 영월군, 횡성군,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보은군,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경주시, 영주시, 문경시,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진주시, 완주군, 무주군, 고창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영암군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2015.01.21.	단양군, 평택시, 태백시, 안성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고운최치원인문관광 도시연합협의회	2015.07.23.	보령시, 서산시, 군산시, 경주시, 문경시, 의성군, 창원시, 함양군,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2015.09.10.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서울 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인천 남구, 부평구, 광주 서구,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남구, 북구, 광산구,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담양군, 해남군,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 합천군
동서통합남도순례길 행정협의회	2015.10.26.	순천시, 광양시,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함안군, 하동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2015.9.14.	서울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강남구, 부산시 금정구, 사하구, 인천시 인천 동구, 인천 서구, 광주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중구, 달서구, 유성구, 대덕구, 대전 서구, 세종시,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천안시, 홍성군, 부여군,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 군포시, 황성군, 원주시, 춘천시,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칠곡군, 김해시, 창원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6.1.22.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마포구, 광진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광주 서구, 광산구, 남구, 대전 서구, 유성구,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양평군, 구리시, 여주시, 화성시, 논산시, 아산시, 완주군, 진안군, 영암군, 여주시, 연제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2016. 11. 1.	서울시,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강서구, 보은군, 부여군, 서대문구, 성남시, 수원시, 양평군, 완주군, 전주시, 제주도, 평택시, 행정안전부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2016. 6. 26.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광주)광산구, 남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충북)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전북)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전남) 담양군, 구례군,(경북) 포항시
고려인삼시군협의회	2016.06.01.	인천 강화군, 파주시, 김포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홍천군, 증평군, 음성군,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진안군, 고창군, 영암군, 영주시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2016.12.26.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의령군, 합천군
한국인권도시 행정협의회	2017. 12. 7.	경기 광명시, 수원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서울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은평구, 인천 남구, 부평구, 전남 여수시, 전북 완주군, 전주시, 정읍시, 충남 아산시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행정협의회	2017. 7. 27.	세종, 보령, 공주, 부여, 청양
전국 책임있는 도시 협의회	2018.11.28.	강북구, 고창군, 공주시, 광양시, 구로구, 구미시, 군포시, 금천구, 김포시, 김해시, 논산시, 당진시, 미추홀구, 서산시, 순천시, 아산시, 안산시, 양천구, 완주군, 울진군, 전주시, 제천시, 증평군,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천시, 포항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18.3.31.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북구, 연제구, 인천미추홀구, 광주서구,

협의회명	구성일자	참여 지자체명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여주시, 구리시, 원주시, 홍천군, 보은군,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여주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2019.09.16.	단양군, 옹진군,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구례군, 곡성군,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의령군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2019.8.23.	서울 성동구, 부산 금정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경기도 안산, 화성, 남양주, 안양, 이천, 오산, 과천, 충남 논산, 경남 거제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4) 운영 관련 질의 사례

행정협의회 Q&A

Q. 질의내용

- ◆ 행정협의회 사후보고 절차와 관련하여, A광역시, A광역시 내 n개 자치구, 인접 n개 시·군·구의 보고받는 기관과 각각 보고 여부

A. 답변내용

- ◆ 「지방자치법」 제152조 1항에서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 하도록 규정. 따라서, A광역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n개 자치구와 인접 n개 시·군·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함

Q. 질의내용

- ◆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가 11개일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A. 답변내용

- ◆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Q. 질의내용

- ◆ 시·군 또는 자치구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전담직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A. 답변내용

- ◆ 지방자치법 제153조는 협의회 조직은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 법령의 규정없이 규약으로 전담직원을 둘 수는 없음

04 지방자치단체조합

1) 개요

❖ 개념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권은 불인정
-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행정협의회는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점에서 같지만, 법인격 유무에 따라 차이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당연 법인으로 법인설립登記 불필요

❖ 연혁

- '88. 4. 6,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89.12.30,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능 강화(특정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로 명확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제164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2항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2) 절차별 추진 내용

2-1. 조합 설립



1. 협의

- 조합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규약내용·조합장 및 사무기구의 구성·조합장 선임방법·경비 부담 등 협의

기본계획 내용

- 조합설립 목적 및 필요성
- 사업내용, 추진방법 및 규약의 주요내용
- 조직 및 인력 구성방법
- 향후 추진일정 등

2. 규약제정

-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사항에 대하여 규약을 제정

※ 조합설립승인 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과 지출방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예시) III-5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137p.)

3. 지방의회 의결

-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합구성과 규약관련 사항을 의결
- 규약변경 및 폐지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음

4. 조합 설립 신청 및 승인

❖ 조합 설립 신청

- 조합규약(안), 지방의회 의결서 사본 등을 첨부, 행정안전부에 신청 조합 구성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신청

조합설립 신청시 구비 서류

- 각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합의 규약 및 지방의회 의결 결과
- 조합설립 기본계획(조합의 설립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 등)
- 조합의 조직 및 정원운영 계획

❖ 조합설립 검토 및 승인(행정안전부)

- 조합 설립요건 구비여부 및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여부 확인
 - 조합경비의 부담률 및 재정구조의 안정성,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조합장 및 조합회의 구성·운영의 적절성 등

참고 : 자치단체 조직·정원 승인 (자치분권제도과)

- ◆ 결원보충의 승인(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다만, 5급 이하 결원보충 승인권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
- ◆ 신청절차 : (결원보충 사전협의) → 결원보충 승인신청 및 승인 → 파견명령

5. 조합 설립 운영

- 조합장 및 조합직원 임용, 각종 규정 마련 등
 - 조합사무소의 설치, 조합회의 구성, 조합장 및 사무직원 임용, 각종 운영규정 마련, 조합 설립 등기(고유번호등록 등)

❖ 조직 구성

- 조합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조합회의, 집행기관의 장인 조합장 및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직원 배치
 - 조합회의 위원과 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 ※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위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회의 위원 또는 조합장을 겸할 수 있음

❖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 조합회의는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중요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조합이 제공하는 역무 등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징수
-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사무를 총괄

❖ 조합의 지도·감독

- 시·도가 구성원인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 시·군·구가 구성원인 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단, 시·군·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음
 -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합의 설립·해산·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 연도 종료 후 조합회의 운영 및 세입·세출 예산 운영 실적을 감독기관에게 제출

2-2. 조합 해산



1. 협의

- 조합해산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해산 관련 협의
 - (기본계획) 조합해산 진행계획, 조합회의 개최, 청산인 선임 등
 - (기타사항) 조합취득 재산 처분, 사무 이관계획 등 조합해산에 따른 제반절차 추진계획 등
- 해산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주무부서 등에 의견 수렴

2. 조합회의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결

- 조합의 해산결의, 청산인 선임 등을 조합회의에 상정 처리

※ 청산인 의무

- 조합의 사무, 재산목록 실사·확인
- 조합과 체결한 협약·계약·기타 권리의 관계자 통보 및 합의
- 승계대상 조합사무 및 권리·의무사항 등의 조합회의 보고

- 조합운영 관련 각종 규정 폐지규정안 의결
-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조합 폐지 규약안 상정·의결

예시) III-6
지방자치단체
조합 폐지 규약
(147p.)

3. 취득재산 처분 등

- 조합이 취득한 유·무형 재산목록 및 조합사무 전반조사
- 자산, 권리·권한 등에 대한 이관조서 작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 자산·사무이관 계획에 따라 단계별 관리전환 및 사무이관 실시

4. 조합해산 신청 및 승인

- (신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합해산 동의서, 잔여재산 처분 방법 등 첨부 해산승인 신청

양식) III-7
조합해산 신고서
(148p.)

조합해산 신청시 구비 서류

- 조합 해산신고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합해산 의결서
 - 조합의 해산관련 회의록 및 안건
 - 조합의 취득재산 및 잔여재산 처분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 (검토 및 승인) 행정안전부는 조합해산을 위한 절차적 요건 및 형식적 요건의 적합 여부 심의 후 승인
 - 조합해산 사유의 정당성, 조합해산을 위한 조합회의 의결 및 지방의회 의결 절차이행 여부, 조합해산에 따른 취득재산·사무이관 절차 이행여부 등

5. 조합해산등기 등

- 관할 세무서 및 등기소에 해산등기 절차 이행
 - 조합해산 관련 지방의회 의결서 및 행정안전부의 해산승인 공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및 등기소에 해산등기 절차 등 이행

3)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 ('18.12.31 기준)

명 칭	구 성 원	목 적	승인일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광역시·경남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 1.20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경남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4. 1.20
수도권 교통본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교통 광역교통 추진 운영	'05. 2. 4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대구광역시·경북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각종 인·허가사무 및 외자유치 등	'08. 6.10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남원·장수·구례·곡성· 함양·산청·하동	지리산 인근 7개 시군 관광개발사업 공동 추진	'08. 9. 5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7개 시·도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익을 지방상생발전 재원으로 활용	'10. 5. 3
천안·아산 상생협력 센터 관리조합	천안시, 아산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독자성 확보	'17. 11. 29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 조합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강원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18. 3. 8

※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91.11.7)'은 『수도권매립지공사』로 전환('00.7.22) '자치정보화조합('03.1.21)'은
특수법인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08. 2.21)

※ (해산)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부산광역시-경남도, '11. 6. 8),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부산광역시-김해
시, '11.12.29), '황해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충남도, '14.12.30)

I.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

4) 운영 관련 질의 사례

지방자치단체조합 Q&A

Q. 질의내용

-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동법』 제2조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A. 답변내용

-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음

Q. 질의내용

- ◆ 3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자체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규칙을 제정할 수 없으면 내부 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A. 답변내용

-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6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정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 23조에 의한 규칙으로 제정할 수는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 따라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지침이나 세칙 등으로 운영할 수 있음

Q. 질의내용

- ◆ 00조합이 ‘전문 직원’이라는 명칭으로 “임기제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나 대우로 직원 채용이 가능한지?

A. 답변내용

- ◆ 00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그 법적 성격은 공법상 법인임. 따라서 공법상 법인인 00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음

※ (예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4) ⑦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Q. 질의내용

- ◆ 조합 형태로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을 해당 시·도의 소속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A. 답변내용

- ◆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법상 법인으로, 지방자치법 상의(제113조 내지 제116조2) 소속기관(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구 등)으로 볼 수는 없음

Q. 질의내용

- ◆ A광역시와 B도가 승인을 받아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 A광역시 또는 B도가 단독으로 조합 사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A. 답변내용

-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은 시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도의 출자·출연기관, 시·군·구청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A광역시와 B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사대상이 아님. 또한, 지방자치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동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합회의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PART II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1. 갈등관리 제도
2. 분쟁조정 제도



1. 갈등관리 제도

이 장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업무 참고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16.12)」**에서 발췌한 것으로,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공공갈등 정의와 갈등관리 제도 근거 규정

❖ 공공갈등의 정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상호간 또는 이해당사자와 해당 기관 간에 발생하는 이해관심사의 충돌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2007년 2월 12일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공정책과 관련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관한 표준절차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갈등관리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 「갈등관리 규정」 제정 목적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

❖ 「갈등관리 규정」의 의의

- 동 규정은 기존의 명령적이고 통제적인 행정문화에서, 이해당사자나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갈등관리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방법으로 갈등관리 방향을 정립
 -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한 갈등의 사전 예방 및 해결 노력(제10조)
 - 다양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제15조)
 - 갈등조정협의회와 같은 다양한 갈등해결절차의 활용(제16조)

❖ 갈등관리 규정 구성과 특징

- 공공기관 갈등관리는 각 기관이 소관 갈등에 대해 책임·관리함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구성·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

갈등관리 종합시책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갈등의 선제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 및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제고
갈등영향분석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 ●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설치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책 등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회의를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일반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기본규정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07)

- 중앙행정기관은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운영(의무)
- 국무조정실은 종합 지원

지자체·공공기관

➢ 갈등관리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 운영 가능

- 자치단체 갈등관리제도 자체적 운영
- 갈등관련 조례는 '07년 충북을 시작으로, '19년 8월 기준 112개 지자체에서 제정

02 갈등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 갈등관리 종합시책

-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갈등관리 규정’）」의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추진
- 필요성
 - 소관 개별현안을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계획, 진도분석, 자체평가 등을 수립·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 해결을 도모
- 업무 책임
 -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자체평가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업무는 기획담당관실 등 각 부처의 총괄부서에서 담당
- 갈등관리 대상 업무의 분류와 관리 방향
 - 갈등관리 대상 업무는 주기적 또는 수시로 검토되어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될 수 있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관리 방향들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음

대분류	관리 방향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입법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와 협의를 통한 사전 예방 ● 이해당사자 영향분석(예방적 갈등영향분석) ● 숙의적 의견수렴 기법 등의 활용
갈등이 이미 표출되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당사자 조사(갈등 발생 후 시행되는 갈등영향 분석) 또는 중립자의 활용 등 새로운 갈등해결절차의 모색과 시도 ● 이해당사자 조사를 통한 대화채널 구축 및 해결절차 진행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일한 유형의 갈등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을 유발 또는 갈등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는 시스템적 요인(제도 등)에 대한 진단 및 개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계획
 - 분류 및 파악된 갈등 사안들의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예방 및 해결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용하여야 함
- 책임 및 실무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계획
 - 책임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스템 개선 및 갈등관리의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무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 갈등관리능력 인사운영기준 반영
 - 각 부처는 성과관리 및 평가시 갈등관리능력, 갈등예방 및 해결 실적 등을 가산점 형태로 반영토록 함
- 부처의 갈등관리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 각 부처는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및 갈등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점검, 평가에 앞서 매년 11월말까지 부처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 평가를 실시토록 함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배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영향분석을 심의하여 갈등구조와 해결방안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검토·보완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교육훈련 등의 전문적인 자문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 ●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1/3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
선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정책 및 사업 내용 관련 전문가
위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걸쳐 활용 가능한 기구 ● 갈등관리에 관한 폭넓은 논의의 장이자 의견 수렴 통로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심의 ●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정책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의 정책반영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님 ● 공공기관의 장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과정 또는 사업시행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 구성 및 운영

- 갈등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적 개최
 - 모든 위원들의 참여
 - 기획총괄부서
 - 갈등관리 관련 종합시책, 법령 정비, 교육 훈련 관련 자문
 - 갈등관리 시범 사업 선정 시 자문
- 갈등현안 논의를 위한 수시 개최
 - 현안과 관련된 전문가들 참가(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갈등관리 전문가 참가
 - 기획총괄부서
 - 해당 실무부서 실무자
 -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자문

참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총괄부서의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노력에 자문을 주고, 실무부서의 갈등현안에 대한 자문을 줄 수 있는 기구로 활용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특히, 갈등현안에 대한 논의 시에는 해당 정책 및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갈등관리전문가와 상호 지식이 보완되도록 할 수 있음

03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갈등관리 규정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목적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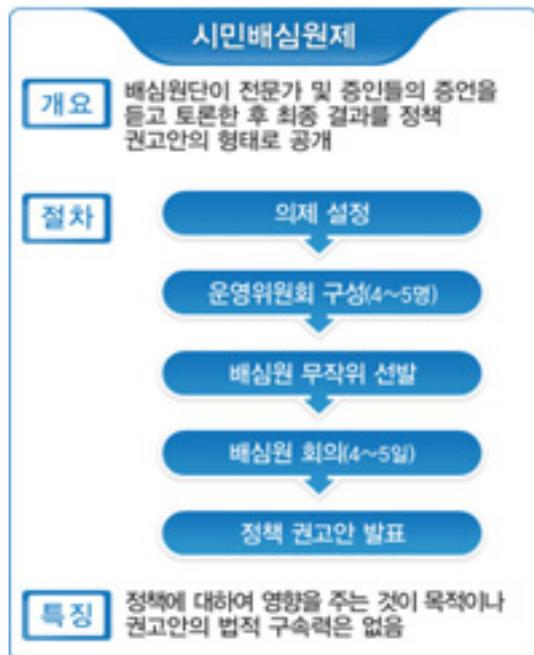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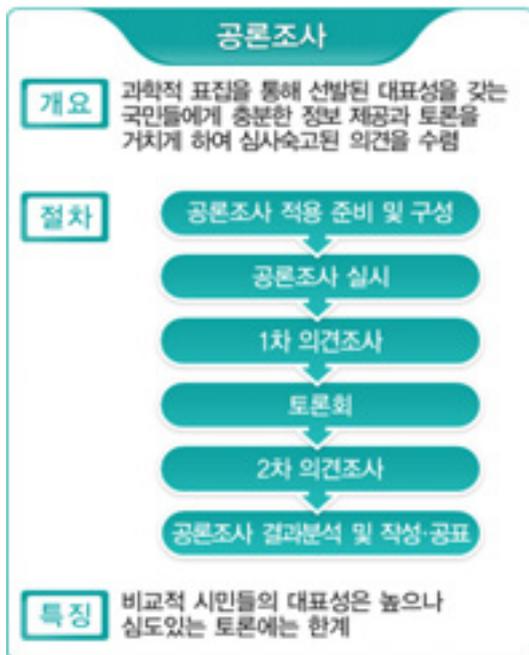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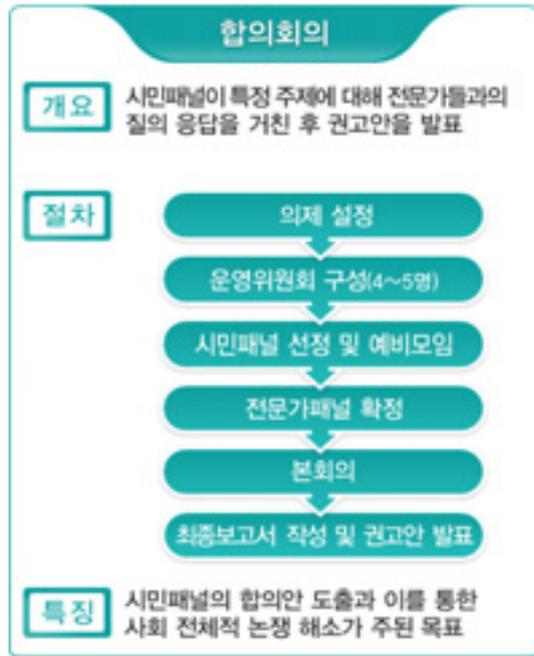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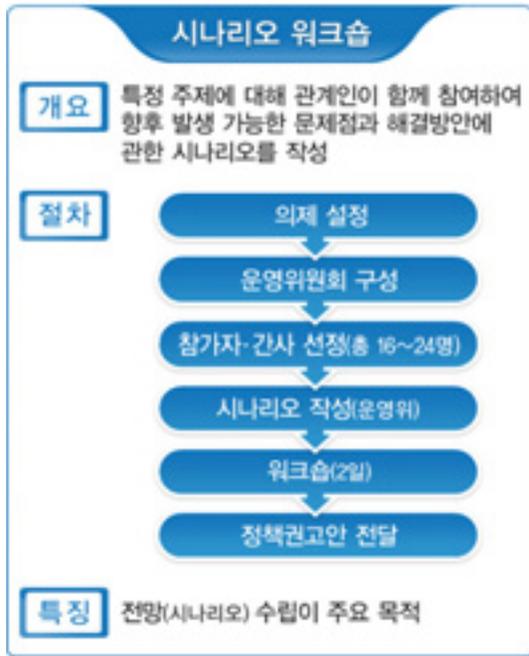
- 기존의 여론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의견 수렴기법
 - 갈등 상황의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과정(Deliberation)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여론 및 의견의 파악이 목적
 - 이해당사자 간 협의 및 협상 과정의 전이나 후에 적용

❖ 참여·숙의적 의견수렴 기법

- 참여 및 숙의적 의견수렴 기법은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다음의 4가지 기법이 있음

시나리오 워크숍 (Scenario Workshop)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 (Citizen's Jury)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3장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기법





2. 분쟁조정 제도

❖ 분쟁조정제도 개요

구 분	운 영 목 적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시·도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구간 분쟁 및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간 분쟁, 매립지 등 신규토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등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 조정위원회	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 심의·의결	『지방자치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조정	『지방자치법』 제168조

0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1) 개요

❖ 개념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

❖ 구성

- 위원장 포함 13인 이내, 국무총리 소속
- 위촉직(4인) :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임기 2년(별도 연임 제한 규정 없음)
- 당연직(4인)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 지명직(2~5인) : 안건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중 위원장이 지명
※ 간사 : 자치분권정책관

❖ 연혁

- '99. 8.31, 행정협의조정기구 설치근거 마련('00. 3. 2 시행)
 - 당시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운영세칙) III-8
행정협의조정
위원회 운영세칙
(149p.)

- 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에 대한 행정부 내 사전조정기구 부재로 '행정쟁송' 등 사법적 판단에 의하도록 규정
-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 일환으로 '99. 8.31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지방간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조정기구' 설치(지방분쟁조정기능 강화)
- '00. 5.13, 제1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 위원 13인 이내(위촉직 4, 당연직 5, 지명직 2~4), 임기 2년
 - 위촉직 위원(위원장 1, 위원 3)은 국무총리가 위촉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포함, 9인 이내) : 관련 중앙부처 차관 및 자치단체 부단체장
- '02. 5.13, 제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 '04. 5.20, 제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 '06. 7.21, 제4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 '08. 7.21, 제5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 '10. 8. 3, 제6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
- '11. 7.14,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 ('11.10.15 시행)
- '12. 8. 3, 제7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임기: '12.8.3~'14.8.2)
- '14. 9.11, 제8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임기: '14.9.11~'16.9.10)
- '16. 9.11. 제9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임기: '16.9.11~'18.9.10)
- '19. 1. 2. 제10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임기: '19.1.2~'21.1.1)

2) 절차별 추진 내용



1. 당사자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신청
 -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신청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심의대상 사무인지 우선 판단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1조)

양식) III-9
위원회
조정신청서
(155p.)

국가사무 (예시)

- ◆ 외교·국방·사법·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 ◆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사무
- ◆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 사무
- ◆ 국가하천, 지정항만, 고속도로,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 사무 등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① 경부고속철도 4-1공구 역명 선정(아산시 → 건설교통부)
 - ☞ 경부고속철도 사업과 역명칭의 제정·선정사무는「지방자치법」제11조 제6호에 포함되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하여「각하」의결
- ② 신항만 명칭 관련 협의조정(해양수산부 → 부산시·경남도)
 - ☞ 항만명칭을 결정하는 행위는 항만관리사무의 하나이므로 지정항만인 신항만 명칭결정은 「지방자치법」제11조 제4호에 포함되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하여「각하」의결

- 협회 운영세칙(제3조)에서 규정한 제외대상 사무인지 여부

제외대상 사무

-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 ①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분쟁(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 ② 하천의 우수사용에 관한 분쟁(하천법 제54조)
 - ③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등에 대한 분쟁(수산업법 제89조)
 - ④ 설계, 시공, 건설공사,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등
- ◆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항
- ◆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상황
- ◆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청시 구비서류(신청기관)

- 안건명, 신청기관 및 피신청기관, 청구목적 및 조정 필요성, 이견내용, 기타 첨부서류 등

- 신청사실의 보고 및 통보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

2. 실무조정회의 ※ 운영세칙 제7조의3

- 안건별로 지정된 주심위원이 주재하여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을 지정 (운영세칙 제7조의2)
- 위원회 상정하기 전 안건검토 및 당사자 간 의견조율 진행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제도

3. 실무위원회

《 실무위원회 운영 》 (운영세칙 제7조)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원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 법제처 차장,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자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
 - ※ 간사 : 행안부 2급~5급 공무원 중 실무위원장이 지명 (통상 자치분권지원과장 수행)
- (개요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이,,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 다만 단순보고안건 등 경미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 생략 가능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

4. 본위원회

《 본위원회 운영 》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8~13인
 - 위원장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 위원
 - . 위촉직(4, 민간위원) : 위원장(1) 및 위원(3)
 - . 당연직(4, 정부위원) :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장관, 법제처장
 - . 지명직(2~5, 안건 당사자기관) :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 ※ 간사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 (개요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이,,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대참(위임장 지참)시킬 수 있으며, 대참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짐 (운영세칙 제5조)

양식) III-8
붙임1. 위임장
(154p.)

-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결과,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최종 심의·조정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요구 가능
- 회의록 작성 및 심의 조정 결정문 작성(운영부서)
 - (회의록)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및 주요내용 등
 - (결정문) 안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취지, 이유, 의결일시 등

5. 조정결정 사항의 보고 및 통보

- 위원장은 협의·조정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면 지체없이 국무총리에 보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결정문을 첨부하여 협의조정 결과를 통보

6. 조정결정 사항 이행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결정사항을 이행
 - ※ 협의·조정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절차 및 불복 절차는 미규정

3)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및 결정사례 ('19.9기준)

❖ 분쟁조정 18건(조정 9, 각하 2, 종결1, 취하 6)

① 군산 개야도 어업권 손실 보상(전북 군산시 → 건설교통부)

- 군산시 개야도 어촌계의 어업권 연장허가 신청('95.11 ~ '00.11)에 대해 군산시가 건교부의 공문에 의거 불허가 처분
 - 개야도 어촌계는 군산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00.10)
- 군산시는 손실보상금 64억원을 개야도 어촌계에 변제하고 이에 대해 건교부에 구상을 청구하였으나 건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0.11.9)

« 조정 ('01.11. 7) »

☞ 군산시에서 개야도 어촌계에 보상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외항 연결도로(1.1km) 확·포장 사업을 지원토록 결정

② 난지도 폐가전 처리시설 보상(환경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난지도 폐가전제품 처리시설 부지를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부지로 결정('99. 6)
- 환경부는 시설을 이전코자 이전 보상금(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1.1.10)

« 취하 ('01.11. 7) »

☞ 실무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손실보상 요구는 법적 논리가 부족하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서 수용, 조정신청을 취하

③④ 포항 정치망 어업권 손실보상(경북 포항시 → 해양수산부)

- 포항시가 정치망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 의견조회한 결과, 선박 입·출항 불편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93. 8)
 - 정치망 어업권자인 이○○, 이○○는 포항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99. 9, '97.11)

- 대법원 확정판결로 포항시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수부에 구상을 청구하였으나 해수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2.12. 2, '03. 2. 3)

《 취하 ('03. 6. 4) 》

☞ 해양수산부가 소송비용을 포함한 보상금액을 지역 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실무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병합심리)

⑤ 지하철 분당선 개포 1·2역 신설 사업비 부담(철도청 → 서울특별시, 토지공사)

- 철도청은 '89.11월 분당선 실시설계에 따라 선릉 ~ 수서간 개포지역에는 1개역(개포3역)만 설치기로 결정하였으나
 - 교통영향평가결과와 강남구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2개역(개포1·2역)을 추가 설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추진
- 철도청은 추가로 설치된 2개 전철역사에 대한 사업비 부담률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2.10.31)

《 조정 ('03. 6. 4) 》

☞ 개포1역은 국가와 서울특별시가 각 50%씩 부담 결정, 개포2역은 당초 부담비율대로 결정 (국가 22.77%, 서울 26.48%, 토공 50.75%)

⑥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칭 선정(충남 아산시 →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에서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의 역사명칭을 충남도에 의뢰('00. 8)하자 충남도는 '장재역'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건설교통부는 역사명칭을 '천안아산역'으로 결정
- 아산시는 속주주의를 무시한 자치권의 침해행위라며 아산지역의 여건이 반영된 역명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3. 8. 4)

《 각하 ('03. 8.26) 》

☞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전국적 규모의 사업이며 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의 전속적 사무에 해당하므로 협의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 결정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⑦ 경인2복선 전철사업비 분담(철도청 → 경기 부천시)

- 철도청과 부천시는 경인 2복선 전철건설 사업비 중 일부를 중동신도시 개발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협약을 체결('94. 1.25)

※ 분담금 500억원(부천시 290, 대한주택공사 136, 한국토지공사 74)

- 부천시는 지가하락, 분담금 과다책정 등을 이유로 사업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분담액을 경감해 줄 것을 요구('99.10.28)
- 철도청은 당초 체결된 분담금 협약서에 따라 전액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며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3.12. 4)

《 취하 ('04.10.19) 》

☞ 관계부처 국장 회의 및 당사자간 협의(2회)를 통해 '05년 상반기까지 부천시에서 미납금을 납부키로 하자, 철도청에서 조정신청을 취하

⑧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변 방재대책(부산광역시 → 건설교통부)

- '03. 9월 태풍 '매미' 내습시 설계조건을 초과한 해일고 및 우수기능의 한계 등으로 녹산국가산업 단지의 해안변 공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338개 업체 572억원)
- 부산광역시는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위한 주관부처 결정과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나 관련부처 이견으로 결정이 유보되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05.5.27)

《 조정 ('05. 9.14) 》

☞ 녹산국가산업단지 방재대책 사업비는 국가 60%, 부산광역시 20%, 토지공사 20%로 분담비율을 조정

⑨ 신항만 명칭(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경남도)

- '97. 10월 '부산신항 건설사업' 고시 이후 경남도에서 명칭변경을 지속 건의하는 등 신항만 명칭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간 분쟁

- 해양수산부는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관련 자치단체간 참여한 이해대립으로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을 신청('05.5.27)

« 각하 ('05. 9.14) »

☞ 항만사업은 자치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의 전속적 사무에 해당하므로 협의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 결정

⑩ 제2롯데월드 신축(국방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올림픽로지구내 C2부지(제2롯데)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결정안을 심의·가결('06. 2)
 - 사업자가 제시한 건축물의 높이(555m)는 도시관리계획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
- 국방부는 『국지계기절차 수립기준』(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계기접근절차 보호구역내 건축제한 고도는 203m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행정협의조정위 조정신청 ('06. 5.23)

« 조정 ('07. 7.26) »

☞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3m 이내로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의견을 수용 결정

⑪ 제2롯데월드 신축(서울특별시 → 국방부)

- (주)롯데물산은 서울공항의 비행안전 보장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제2롯데월드 신축(555m)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요청
- 서울특별시는 '07년 행정협의조정 결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상황변화에 따른 (주)롯데물산의 요청을 감안,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8.12.31)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조정 유형별 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 조정 ('09. 3.31) 》

☞ '공군본부·롯데물산간 합의서' 이행을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건축고도를 203m 이내로 제한한 '07. 7.26 결정을 철회

⑫ 포스코 新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경북 포항시 → 국방부)

- 포항시는 국방부와 사전 협의 없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초과하는 포스코 新제강공장 건설을 허가('08. 6)
 - '09. 7월 국방부(해군6전단)에서 불법 건축물인 新제강공장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여 '09. 8월부터 공사가 중단
- 포항시는 新제강공장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행정협의조정을 신청('10. 6. 1)

《 조정 ('11. 1.18) 》

☞ 포항공항의 활주로 증설 등 공항안전성을 제고(비용부담 : 포스코)하는 조건으로 공장의 공사재개를 허용하는 조정결정

⑬ 청주 국유재산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국방부 → 충북 청주시)

- 청주시가 국방부 국유재산(舊, 기무부대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08.12.26)
- 국방부는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도시계획 결정으로 매수계약자 민원유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도시계획결정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08.12.26)

《 취하 ('11. 1.27) 》

☞ 실무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 국방부에서 조정신청을 취하
※ 청주시에서 국유재산을 매입하되, 5년간 분납하기로 국방부와 합의

⑭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법무부 → 경기 안양시)

- 법무부는 노후화된 안양교도소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협의권자인 안양시에 재건축 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안양시는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와 도시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협의불가를 통보('11. 2월, 4월, 8월)

- 법무부는 노후화된 안양교도소의 재건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불가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11. 7.18)

《 조정 ('12. 1.30) 》

☞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취지로 신청한 행정협의조정신청을 인용하며, 법무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

⑮ 광화문 태극기 게양 분쟁 (국가보훈처 → 서울특별시)

-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을 위한 MOU 체결('15.6.2)에 따라,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 상시 설치 필요
 - 서울시는 열린 공간 조성 목적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 지양, 경복궁 및 북악산 조망권 침해 및 상시 설치를 합의한 적이 없음 주장
- MOU에 광화문광장으로 명시되었으나, 보훈처가 상시설치를 요구하여 광화문광장 외 대체부지 협의 중에 보훈처가 행협위 조정 신청행정협의조정을 신청('15. 12. 19.)

《 취하 ('17. 6. 13) 》

☞ 보훈처가 2017년 설치 예산 미반영으로 행정협의조정 신청 취하

⑯ 안산 사동 개발사업 주체 분쟁(경기 안산시 → 교육부)

- 안산시는 사동90블록의 사유지를 '16. 6. 20. GS컨소시엄(PFV)에 매각하여 소유권이전, GS컨소시엄은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주택법」에 따른 승인을 득하여 사업 시행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 및 제4조 의거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주요 내용 및 조정대상 분쟁 유형

- 안산시 사동 90블록 주택건설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 해석에 대하여, 안산시는 사업승인을 받은 GS컨소시엄임을 주장하나
 - 교육부가 '개발사업시행자'에 안산시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여 이를 변경 요청하는 행정협의 조정 신청('17. 10. 11.)

《 종결 ('18. 3. 5.) 》

☞ 안산시가 교육부 유권해석인 공동개발 사업시행자라는 것을 수용, 안산시-교육부-PFV 간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종결 처리

⑰ 인천대학교 장기차입금 이자 상환주체 분쟁(교육부 → 인천광역시)

- 인천시는 인천대가 '13년 국립대로 전환하면서 전환 후 5년간('13~'17년) 대학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500억을 인천대가 우선 장기차입하게 하고 '18년부터 상환하기로 함
 - 장기차입에 대한 내용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기준」 회의에서 협의, 인천대가 5년간 장기차입하면서 발생한 이자는 교육부에서 우선 지원하고 '18년부터 원금 및 이자 전체를 인천시가 상환하기로 함
- 상환시기 도래하여 교육부가 원금 및 이자 상환 요청하였으나, 인천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운영비 지원기준」 이 합의 사항이 아니므로 원금만 상환을 주장하여 이자 상환주체에 대해 행정협의조정 신청('18. 6. 21)

《 조정 ('19. 1. 21.) 》

☞ 차입금 상환 시 원금 채무에는 이자 채무가 종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인천시가 교육부 기 지원 이자 교육부 상환 및 거치 후 이자 인천대를 통해 모두 상환 결정

⑱ 세종시 예정지역 1단계 생활용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 분쟁(세종시 → 행복도시건설청)

- 행복청은 세종시 출범 전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상수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방안 방침」을 결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 협약」 체결('07.3)

- 예정지역 내 사업비는 LH가 부담 설치, 예정지역 밖은 대전시가 투자하여 설치 후 행복청이 비용(322억원) 대전시에 분할 상환
- 수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서 관련 사무가 지자체 고유사무인 점 고려하여, 행복청은 협약에 따른 상환 납부의무 및 수도 관련 사무를 당시 지자체인 舊연기군에 승계('11.9)
- 세종시 출범('12.7) 후 세종시는 행복도시법상 기반시설 설치가 국가 지원 의무이므로 납부하고 있는 설치비용 상환 주체가 행복청임을 주장, 행정협약조정 신청('14.12.9)

《 조정 ('19. 9. 19.) 》

☞ 행복도시법 제23조 제2항 및 세종시법 부칙 제5조 제3항 등에 따라, 행복청이 체결한 협약 상 예정지역 밖 설치비용 상환주체는 행복청이 아님을 확인하고, 세종시가 수도사업 자로서 설치비용을 부담

02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 개요

❖ 개념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을 조정
-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이 경우 그 취지를 당사자에 알려야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내지 제94조

❖ 기능

시·도간 또는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간
분쟁 조정

매립지 등 신규 토지
귀속 지자체 결정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 소속) : 시·도내 기초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운영세칙) III-10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운영세칙
(159p.)

❖ 구 성

-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 행정안전부 소속
 - 위촉직(6인) : 위원장 및 위원(임기3년, 연임 가능), 행안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
 -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당연직(5인)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차관
- ※ 간사 : 자치분권지원과장

❖ 연 혁

- '88. 4.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 분쟁조정기관
 - 내무부장관 : 시·도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분쟁
 - 시·도지사 : 시·군·구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는 분쟁
 - 당사자 신청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
- '94. 3.16,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내무부장관 소속 /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위원장 : 내무부차관(부위원장 : 내무부차관보)
 - 위 원 : 관계부처 1급 및 전문가 중에서 내무부장관 임명·위촉
 - 간 사 : 위원장이 내무부 소속 공무원중 임명(행정과장)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도지사 소속)
 - 위원장 : 시·도 부시장·부지사(부위원장 : 기획관리실장)
 - 위 원 :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위촉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 위원회 운영
 - 당사자 신청에 의한 안건 상정 ⇒ 위원회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
- '99. 8.31, 민간위원 위촉·직권조정제도 도입 등 위원회 기능강화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로 구성
 - ※ 위촉직 6인(행안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 당연직 5인
 -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조정」제도 도입
- '00. 4.25, 제1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
 - 위원장 선우중호(명지대 총장), 위원 5인 대통령 위촉
 - 당연직 5인 : 행자·산자·환경·건교부·기획예산처차관
 - ※ 제3기('07. 1.15~'10. 1.14 / 위원장 지은희), 제4기('10. 3. 2~'13. 3. 1 / 위원장 김동건), 제5기('13. 5.16~'16. 5.15/위원장 홍정선), 제6기('16. 6. 1~'19. 5.31/위원장 홍정선)
- '09. 4. 1, 매립지 등 관할 지자체 결정 등 위원회 기능 강화
 - 매립지, 지적공부 등록 누락 토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
 - ※ 중앙분쟁조정위 의결 → 행안부장관 결정 → 불복시 대법원 제소

2) 절차별 추진 내용

2-1. 일반분쟁 조정



1. 당사자 신청(시·도, 시·군·구 또는 그 장)

-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대상 사무인지 우선 판단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
 -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와 시·군·구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 기타 중분위 운영세칙(제5조)에서 규정한 제외대상 사무인지 여부 확인 등

양식) III-9
위원회
조정신청서
(155p.)

제외대상 사무

-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 ① 환경오염,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분쟁(환경분쟁조정법 제5조)
 - ② 하천의 유수사용에 관한 분쟁(하천법 제54조)
 - ③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등에 대한 분쟁(수산업법 제89조)
 - ④ 설계, 시공, 건설공사,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등
- ◆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사항
- ◆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상황
- ◆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청시 구비서류(신청기관)

- 안건명, 신청기관 및 피신청기관, 청구목적 및 조정 필요성, 이견내용, 기타 첨부서류 등

- 신청사실의 통보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당사자에 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지체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 행정안전부장관의 직권조정

-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
- 권고기간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2. 실무조정회의 ※ 운영세칙 제8조의3

- 안건별로 지정된 주심위원이 주재하여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을 지정 (운영세칙 제8조의2)
- 위원회 상정하기 전 안건검토 및 당사자 간 의견조율 진행
- 안건과 관련하여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도 구성·운영가능

※ 소위원회(시행령 제90조 및 운영세칙 제8조)

- (구성) 5명
 - . 위원장 : 행안부 차관
 - . 위원 :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2명씩 위원장이 지명
- (개요요건) 위원 3인이상의 참석으로 개의

3. 중앙분쟁조정위 전체회의

《 본위원회 구성·운영 》

-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 위원장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위원
 - . 위촉직(6, 민간위원) : 위원장(1) 및 위원(5)
 - . 당연직(5, 정부위원) : 기재·행안·산업·환경·국토부차관
 - ※ 간사 : 자치분권지원과장
- (개요·의결요건)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의결

- 주심위원은 그간 심의 내용을 보고,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최종 수렴하여 심의·조정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 가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을 대참(위임장 지참) 시킬 수 있으며, 대참위원은 의결권을 가짐(운영세칙 제9조)
- 조정신청 분쟁이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되는 사안일 때는 병합하여 심리(운영세칙 제2조 제3항)
-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 의결 가능(운영세칙 제5조의1)
- 회의록 작성 및 심의 조정 결정문 작성(운영부서)
 - (회의록)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및 주요내용 등
 - (결정문) 안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취지, 이유, 의결일시 등

양식) III-10
붙임1. 위임장
(164p.)

5. 조정결정 사항의 보고 및 통보

- 중분위 조정 결정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서면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6. 조정결정 사항 이행

- 지방자치단체는 조정결정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 ※ 중장기 소요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안부장관에게 보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분위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킨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음

2-2. 매립지 등 신규토지 관할 결정



1. 관할결정신청(면허관청, 지방자치단체장)

❖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면허관청, 지방자치단체장)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준공검사 전에 신청
 - 신청사유, 신청내용, 매립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관련기관 의견서, 기타 매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 ※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신청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누락 토지
 - 지적소관청이 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신청
 - 신청사유, 신청내용, 관련기관 의견서, 기타 지적소관청에 제출된 신규등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 신청사실 공지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립지 등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 접수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지
 - ※ 공지방법,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

❖ 심의요청

- 행정안전부장은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 매립지 등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 요청

2. 실무조정회의

- 행정안전부 공고기간 동안 매립지 등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에 대해 인근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사항에 대한 이견이 접수된 경우, 일반분쟁과 같은 절차로 이후 진행
- 관할신청에 이견이 있는 매립지 건에 대해 주심위원지정 및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의견 청취 및 이견 조율

3. 조정·의결

- 중분위 간사는 신청개요, 신청사유, 관련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및 공고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한 후 중분위에 회부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 경계관련 이해관계 대립이나 의견제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립지 등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심의·의결
 - ※ 이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 의결 가능(운영세칙 제5조의1)

4. 결정사항 통보

- 행정안전부장은 중분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및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은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

조정결정사항 불이행시

❖ **직무이행명령(지방자치법 제170조)**

- 주무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직무이행을 명령
- 직무이행 명령 불이행시 행정 대집행 등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행정대집행법」을 준용

❖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즉시 통보 및 보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거나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및 결정사례('19.9기준)

1 일반분쟁조정 24건 (조정 14건, 기각 1건, 각하 4건, 취하 5건)

① 아산국가공단항만 개발 경계 관련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 평택시는 공단개발에 따른 항만시설의 일부가 준공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98. 3.23)
- 이에, 당진군에서도 국립지리원 발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항만시설을 직권으로 등록('99.12. 7)함에 따라, 평택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00. 3.31)

« 각하 ('01. 1.31) »

- ☞ 당진군에서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00. 9)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
« '04. 9.23, 현재 » : 당진군 관할권으로 확인
-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 공유수면매립지는 당해 공유수면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귀속됨

② 경전철 노선변경에 따른 환승역사 건립 부담(경기 의정부시 → 서울특별시)

- '내무부 분쟁조정위'는 의정부내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설과 관련, 서울시에서 환승역사 건립비용을 부담토록 결정('96.10)
- 의정부시는 타당성 조사 후, 환승역사를 변경(도봉산역→ 회릉역)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사업비 부담을 거부하자, 분쟁조정을 신청('00. 6.15)

« 조정 ('01. 1.31) »

- ☞ '내무부 분쟁조정위'에서 결정된 180억원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과실을 적용(20%)하여 서울시는 144억원을 부담토록 결정

③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잡종재산 인계(경기 김포시 → 인천 계양·서구)

- 경기 김포시 검안면이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로 편입되자, 계양구와 서구는 김포시에 잡종재산 인계를 요구하며, 인천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00. 6.26)
- 이에, 김포시는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00. 9.20)

《 각하 ('01. 1.31)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에 대한 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신청을 각하
 ※ 법률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시 잡종재산도 승계대상이며, 매각한 재산도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함(인천지방법원 원고 승소판결, '01. 1.10)

④ 아산만 방조제 및 담수호 경계 분쟁(경기 평택시 → 충남 아산시)

-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아산 방조제 설치공사가 준공('87.10)되자 '93년 평택시와 당진군은 지적공부에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직권으로 방조제 및 담수호를 중복 등록
 ※ 중복등록 면적 : 방조제 206m, 담수호 998,320㎡
- 이에, 평택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00. 3. 2)

《 조정 ('01. 7. 6) 》

☞ '71. 6월 착공당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되, 방조제는 경기도 의견을, 담수호는 충남도 의견을 수용결정
 ※ 방조제 경계(경기도 의견) : '71. 6월 방조제 착공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
 ※ 담수호 경계(충남도 의견) : '58년 해면으로 포락된 부분은 토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포락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경계를 결정

⑤ 자동차 액화가스 충전소 설치(인천 계양구·경기 부천시 → 경기 김포시)

-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 액화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5km 이내의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 김포시에서 인천 계양구·경기 부천시와 협의 없이 배치계획을 수립·고시('01. 4)하자, 인천 계양구('01. 4.10), 경기 부천시('01. 4. 3)에서 분쟁조정을 신청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 취하 ('01. 7. 6) 》

- ☞ 위원회의 자율·조정 촉구에 대해 당사자간 협약 후,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
- 《 협약 내용 》
 - 인천 계양구, 경기 부천·김포시는 별도로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각 상·하행 예비선정자 2인씩 총 6인을 선정 후
 - 예비선정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1인을 선정 배치노선을 결정하고, 자치단체별 1개의 충전소를 설치

⑥ 자동차 액화가스 충전소 설치(서울 강동구 → 경기 하남시) ※ 송파구는 별도 이의제기

-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 액화가스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5km 이내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 하남시에서 서울 강동·송파구와 협의 없이 배치계획을 수립·고시('01. 4)하자, 서울 강동구에서 분쟁조정을 신청('01. 4.30)

《 취하 ('01.11.23) 》

- ☞ 행정부에서 제시한 중재안을 3개 단체가 수용,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
- 《 중재(안) 》
 - 강동·송파구 관내 민원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
 - 하남시에서 배치계획을 수립, 3개 자치단체가 통합고시하며, 사업자 선정 등 세부사항은 동수의 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결정

⑦ 사설납골시설 공설화(경기 화성시 → 서울 종로구 등 7개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7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납골시설 확보를 위해 경기 화성시 소재 (재)효원납골공원과 연구사용 계약을 체결('04.12.28)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용 허가
- 화성시는 납골시설을 공설화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설치할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06. 5. 4)

《 조정(종결) ('08. 6.17) 》

☞ 화성시는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이 원상회복만을 요구하고 있고 화성시의 요구안에 따를 경우 납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와 분쟁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어 조정을 하지 않는 조정종결을 결정

⑧ **신항만 1-1단계 시설관할권(1차, 경남도 → 부산시)**

-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1-1단계 부두 1차 3선석(879,199㎡) 및 배후부지(88,638㎡)에 대한 임시관할권 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를 지정('05. 9.15)
- 경남도는 동 사안이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간, 사무처리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분쟁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05.11.14)

⑨ **신항만 1-1단계 시설관할권(2차, 부산시 → 경남도)**

- 해양수산부장관은 '06년말 준공된 신항만시설에 대해 '05년말 준공된 3선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시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여 관련시설을 등록하도록 방침을 시달('06.11.1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신항만 1-1단계 부두 2차 부두 3선석은 경남도로('06.12.26), 배후부지(549,776㎡)는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동측은 부산시, 서측은 경남도로 임시관할권을 지정('07. 1.29)
- 부산광역시는 동 사안이 부산광역시와 경남도간, 사무처리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분쟁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07. 3. 2)

《 조정(종결) ('08. 6.17) 》

☞ 동 분쟁에 대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각각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안부의 연구용역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위원회에서 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조정하지 않는 조정 종결을 결정(병합심리)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조정 유형별 조정종결의 결정

⑩ **철곡재래시장 소유권 분쟁(2차, 대구 복구 → 대구광역시)**

- 철곡재래시장은 '65. 2. 1 경북 칠곡군 칠곡읍에 개설·운영되어 오던 중 '81. 7. 1 소재지가 칠곡읍에서 행정구인 대구 복구로 편입되면서 소유권이 대구광역시명의로 등기
- '88. 4. 6 대구 복구는 자치구로 승격되었으나 대구 복구 재산인 철곡재래시장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소유권 반환을 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08. 8.13)

《 취하 ('08.12.10) 》

☞ 관계기관 실무회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결과, 대구광역시에서 소유권 이관이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고 복구청에 소유권을 이관하기로 결정,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

⑪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서울특별시 → 경기 과천시)**

- 서울특별시는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천시 통과구간(선암로~염곡교차로, 570m)에 대해 과천시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요청
- 과천시는 지역주민의 민원(교통난 해소 방안, 토지보상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진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과천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분쟁조정을 신청('10.11.12)

《 조정 ('11.12.20) 》

☞ 서울특별시는 장군마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과천시 건의사항(2건)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과천시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진행과 도로 확장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결정

⑫ 행정구역 명칭 변경 관련 분쟁 (충북 단양군 → 경북 영주시)

- 영주시(의회)에서 단산면 주민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청원을 수용하여 「단산면」 ⇒ 「소백산면」으로 면 명칭을 변경
- 단양군은 양 시·군에 걸쳐 있는 소백산을 특정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함에 반대하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12. 2.20)

《 조정 ('12. 6. 14) 》

- ☞ 면 명칭 변경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할지라도 이웃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조례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단양군이 제기한 '소백산면' 명칭 사용중지 신청을 인용 결정
- ※ 유명 '산·강'의 무분별한 행정구역명칭 사용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정부측에 권고

⑬ 읍내어린이공원 소유권 분쟁 (대구 북구 → 대구광역시)

- 대구 북구 관내 소재한 읍내어린이공원은 '89. 6.15(건교부 고시 제326호) 당시 대구직할시가 승인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칠곡택지개발지구 사업에 의하여 조성
- 대구 북구는 舊내무부 「시유재산조정지침」과 「대구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서 공원관리를 사무 위임한 점 등을 감안, 공원 소유권도 북구로 이전되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12.7.16)

《 기각 ('13. 1. 31) 》

- ☞ 舊내무부 「시유재산 조정지침」, 「지방자치법」, 「국토이용법」 및 「도시공원 조례」 등과 연계하여 대구시 소유의 읍내어린이공원을 대구시 북구로 이전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
- ※ 대구광역시는 자치구와의 상생·협력적 관계와 지역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읍내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권고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주요 내용

⑭ 지역상생발전기금 법정출연금 납입 분쟁(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 → 서울특별시)

- 전 시·도는 2009년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도의 출연금('10~'19년, 매년 수도권 시·도 지방소비세액의 35%) 등을 재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법령에 명시
- 서울시가 출연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지방소비세액의 35%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14.1.10)

《 조정 ('14. 6. 16)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시가 미출연한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할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을 인용 결정
- ※ 서울시의 미출연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납부하여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수도권 시·도와 비수도권 시·도간 상생발전을 위해 설치한 발전기금이 취지대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권고

⑮ 자동차등록사무소 분소운영 분쟁(서울 강남구 → 경남 함안군)

- 경남 함안군이 서울 강남구에 자동차 등록사무소 분소를 설치,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
- 해당 분소는 지역 무관할 자동차 등록제도 취지를 왜곡하여 취득세 징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무소 분소의 폐쇄를 요청하며 분쟁조정을 신청('14.7.7)

《 취하 ('14. 12. 15) 》

- ☞ 위원회의 자율·조정 촉구에 대해 함안군이 서울사무소의 철수계획을 행자부에 제출,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

⑯ 창원-부산 도로건설 손실부담금 분담 분쟁(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가 창원~부산 간 도로(제2창원터널)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공사기간 중 토지 등의 보상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전금 172억 7,800만원이 발생

- 경상남도는 부산시로 인해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비율을 적용한 57억 6,000만원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산시는 거부,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분쟁조정 신청('15.3.30)

《 조정 ('16. 4.25) 》

☞ 주심위원 조정권고안에 따라 감사원 산정 손실보전금 73억원을 기준으로, 부산시가 6.1억원을 부담하기로 양 당사자 최종 합의, 의결

⑰ 전남교육청사 도시관리계획변경 분쟁(전남교육청 → 광주광역시)

- 전남교육청이 舊 전남교육청사 매각을 위해 공공청사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광주시가 광주교육청과 사전협의 미비 이유로 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전남교육청이 분쟁 조정 신청('16.2.17.)

《 조정 ('16. 12. 12) 》

☞ 광주교육청이 舊 전남교육청사를 약 346억원에 5년 분납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광주교육청의 사정으로 '17.5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광주시는 전남교육청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의결

⑱ 개화천변 침수방지 협약 위반에 따른 분담금 분쟁(경기 광명시 → 서울특별시)

- 광명시가 서울시의 개봉1빗물펌프장 운영 부실로 분담금(약 20억원 미납) 납부를 거부하며, 서울시의 펌프장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
- 서울시는 협약대로 펌프장을 정상 운영 관리하였다며 광명시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광명시가 분쟁조정 신청('16.2.17.)

《 취하 ('17. 2. 13) 》

☞ 위원회의 자율·조정 촉구에 대해 미납 분담금을 납부(경기도 17억원, 광명시 3억원)하기로 하고, 펌프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 광명시의 분쟁조정 신청 취하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⑱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보전 분쟁조정(인천 8개 자치구 → 인천광역시)

- '0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면허세'(구세)가 폐지되고 '주행분 자동차세'(시세)로 편입되면서 자치구의 지방세 감소분('02~'15년, 1,355억원)에 대하여 인천 8개 자치구가 인천시에 보전 요구
- 인천시는 이에 대해 시의 재정상 어려움 및 법령상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인천 8개구가 분쟁조정 신청('16.2.3.)

《 조정 ('17. 4. 10) 》

☞ 인천 8개 자치구는 과거 미보전분을 받지 않고, 인천시는 '17.7월부터 舊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8개 자치구에 보전하기로 조정·의결

⑳ 舊 전남교육청 매매분담금 이자율 분쟁(광주교육청 → 전남교육청)

- 광주교육청이 전남교육청으로부터 舊 전남교육청사를 매입하면서 분담금과 함께 연 3%의 이자를 별도 납부하도록 중분위가 조정·결정('16.12.12)하였으나
- 당사자 간 합의한 이자율(3%)은 당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착오로, 광주교육청은 개정된 이자율에 따라 수정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전남교육청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 조 정 ('17. 11.30) 》

☞ 개정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양 당사자는 이자율을 재조정하여 수정 계약 체결토록 조정·의결

㉑ 부산 부전시립도서관 개발사업 관련 분쟁(부산 부산진구 → 부산시)

- 부산진구와 부산시는 시설이 낙후된 시립 부전도서관의 재개발 사업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부산시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시 신축 도서관 건물 옥상층에 舊 도서관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 등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의결
- 부산시가 원형보존 미반영 등을 이유로 부산진구의 신축도서관 설계안 검토를 6차례 거부하면서 이에 따라 부산진구가 분쟁조정 신청('16.11.25)

《 각 하 ('18. 8.27.) 》

☞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산진구와 부산광역시가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합의를 체결('18.8.13), 분쟁이 소멸되어 중분위 심의대상이 부존재하게 되었으므로 각하

㉔ 성내유수지 소유권 반환 신청(서울 강동구→서울시)

- '96년부터 강동구는 관리청으로서 주요 방재시설인 성내유수지를 관리해왔으나, '02년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소유권을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이전
- '15.5월 강동구에서 관련 공사 추진을 위해 유수지 내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자 송파구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하면서 행정마찰 발생, 이에 따라 강동구가 소유권의 송파구 이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울시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17. 3. 7.)

《 조 정 ('19. 2.18.) 》

☞ 성내유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리권 행사가 분쟁의 핵심으로, 강동구-송파구 간 조정을 통해 “성내유수지 소유권 및 관리권 행사에 관한 합의문” 작성, 서울시는 강동구와 송파구 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권고

㉕ 가족길교 유지관리기관 결정 분쟁(서울시→경기 부천시)

- 서울시가「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 공사」시 기존 부천시 도로(봉오대로 527번길)가 단절 되어 통행로 유지를 위한 가족길교(교량) 신설
- 기존 도로상에 교량을 설치해야 하나, 도로 하부에 한전 송전선로의 이설이 불가하여 서울시 경계 방향으로 위치변경 후 설치
-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서울시와 부천시의 이견 발생하여 서울시가 부천시 대상으로 분쟁조정 신청('16.10.28)

《 조 정 ('19. 4.15.) 》

☞ 행정구역 상 위치 및 면적, 교량 공사 시행자, 사전 협의 여부 등 고려하여 가족길교 교량의 유지관리기관을 서울시로 결정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조정 대상과 조정 신청방법

㉔ **까치울터널 유지관리기관 결정 분쟁(경기 부천시→서울시)**

- '17. 1. 18. 동 위원회에 신청된 가족길교 유지관리기관 분쟁 조정 중 부천시가 '사업시행자가 관리함이 타당함' 주장하였으나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음
- 이에 대해, 「여월택지~남부순환로 광역도로 공사」 시 서울시와 경계구간에 '14. 4. 30. 개설한 까치울터널을 사업시행자인 부천시가 관리중임이 부당하다고 주장, 이를 위원회에 유지관리기관 조정 신청('18. 4. 15.)

◀ 각 하 ('19. 4.15.) ▶

☞ 이미 유지관리기관 재정신청에 대한 국토부 회신이 존재하여 각하

2 신규토지 관할 결정 (269건, '19.9. 기준)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 매립지	울산시	'09. 8.26
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앞바다 매립지	울산시	'09.10.20
3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앞바다 매립지	울산시	"
4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앞바다 매립지	울산시	"
5	울산 동구 전하동 1-26 지선 매립지	울산시	"
6	인천 서구 석남동 640 앞바다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09.12.10
7	인천 연수구 동춘동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시	"
8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공유수면 매립지	전남 여수시	"
9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진내리 공유수면 매립지	전남 영광군	"
10	경기 시흥시 방산동 779-12 지선 공유수면 불법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0. 1. 8
11	인천 서구 원창동 396-10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12	부산 남구 용호동 176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시	"
13	울산 남구 황성동 31-5 미등록 토지	울산시	"
14	울산 남구 성암동 299-4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15	울산 동구 일산동 287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16	울산 동구 방어동 1267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17	울산 동구 주전동 800-7 미등록 토지	울산시	"
18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19-4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19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402-1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20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252-127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2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산25-1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2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561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23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395-19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 기장군	'10. 5.12
24	경남 사천시 관할구역 내 9필지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사천시	"
25	부산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북측해역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항건설사무소	"
26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동성씨테크(주) 공장부지 매립지	울산 울주군	'10. 5.12
27	경남 사천시 사등동 93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사천시	"
28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333-7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북 군산시	"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주요 운영절차 및 신청절차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29	경기 시흥시 정왕동 2063 오이도 전면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 시흥시	"
30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주)한텍 공장부지 매립지	울산 울주군	"
3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주)대원에스앤피 공장부지 매립지	울산 울주군	"
3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강림중공업(주) 공장부지 매립지	울산 울주군	"
33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일원 불법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 5필지	부산 기장군	"
34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494-13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 기장군	"
35	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 119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36	인천 서구 원창동 396-4 전면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10. 7.12
37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주)신일 공장부지 매립지	울산 울주군	"
38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무림피앤피(주) 공장부지 매립지	울산 울주군	"
39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에스오일(주) 공장부지 매립지	울산 울주군	"
40	전남도 관할 영해 내 미등록 섬 291개	전남 10개 시·군	"
41	인천 남동구 고잔동 502-2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시	'10. 8.11
42	인천 남동구 고잔동 512-20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 남동구	"
43	인천 서구 원창동 396-7 전면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44	전남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남 해남군	"
45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도	'10. 9. 9
46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초성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남 해남군	"
47	인천 남동구 고잔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시	'10.10.27
48	경남 사천시 서포면 및 송포동 일원 지적 미등록 매립지	경남도	"
49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일원 지적미등록 매립지	전남도	"
50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10.10.27
51	부산 강서구 성북동 가덕도 일원 북측해역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52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농림수산식품부	"
53	부산 기장군 기장읍 등 일원 지적공부 누락지	부산시	'11. 1.13
54	울산 동구 일산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시	"
55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56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57	충남 당진군 송악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도	"
58	인천 옹진군 북도면 등 일원 지적공부 누락지	인천 옹진군	'11. 3.30
59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원 지적공부 누락지	부산 기장군	"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60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원 지적공부 누락지	경북 포항시	"
61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북 군산시	'11. 6. 2
62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63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64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 남동구	"
65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
66	충남 아산시 인주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아산시	'11. 7.20
67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68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69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시	'11. 8.29
70	인천 서구 원창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 서구	'11.11.29
7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72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 안산시	"
73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당진시	'12.2.29
74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12.2.29
75	경남 하동군 금성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하동군	"
76	인천 중구 용유도 연접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 중구	"
77	부산 서구 남부민동·암남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 서구	"
78	신고리원자력 1,2호기 발전소 부지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
79	경남 사천시 마도동 및 노룡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사천시	'12.4.20
80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81	경남 고성군 동해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고성군	"
82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 중구	"
83	울산 남구 황성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남구	"
84	경남 사천시 사등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사천시	"
85	경북 포항시 동해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및 호미곶면 일원 지적공부 등록 누락지	경북 포항시	"
86	전남 고흥군 고흥읍, 풍양·도덕·두원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남 고흥군	"
87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12.6.14
88	충남 서산시 대산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89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송정동 일원 지적공부 등록 누락지	부산 해운대구	"
90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91	울산 동구 방어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동구	"
92	울산 남구 매암동 및 장생포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남구	"
93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및 송도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12. 9. 6
94	전북 부안군 변산면, 진서면 일원 지적공부 등록 누락지	전북 부안군	"
95	인천 중구 운북동, 을왕동, 중산동 일원 지적공부 등록 누락지	인천광역시	"
96	충남 당진시 석문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97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98	경북 경주시 양북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경주시	'12. 9. 6
99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지적공부 등록 누락지	인천 서구	"
100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101	인천 서구 일원(경인아라뱃길사업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102	경북 포항시 남구 송내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12.10.31
10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 안산시	"
104	울산 남구 황성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남구	'13. 1.31
105	전북 고창군 상하면 등 등록누락 토지	전북 고창군	"
106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로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
107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일원 등록누락 토지	전북 부안군	"
108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109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110	충남 보령시·서산시·당진시 등록누락 토지	충남 보령시·서산시· 당진시	'13. 6.13
111	부산 기장군 공수항 및 서암항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 기장군	"
1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일원 지적공부 등록누락지	경북 포항시	"
113	인천 중구 여촌어항시설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 중구	"
114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만항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115	충남 당진시 아산산단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당진시	"
116	부산 기장군 등록누락 토지	부산 기장군	"
117	부산항 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118	충남 서산시 등록누락 토지	충남 서산시	"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119	인천 연수구 송도 6·8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시	"
120	경남 창원시 진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도	"
121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해양수산부	"
122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서산시	'13. 6.13
123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매립지 (평택시 관할)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3. 8.27
124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전면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
125	경기 안산시 대부남동 제방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 안산시	"
126	인천 중구 무의도 등록누락 토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127	인천 중구 운북동 등록누락 토지	인천 중구	"
128	인천 남동구-시흥시간 경계지역 등록 누락지 (시흥시 관할)	경기 시흥시	'13.10.10
129	경북 포항시 신항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130	인천 서구 및 경기도 안산시 등록누락 토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131	경남 하동군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하동군	"
132	울산 울주군 온산읍 남향부두 1·2번 선석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울주군	"
133	경기 화성시 전곡여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13.11.26
134	경남 창원시 진해 군부두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도	"
135	전북 군산시 군산항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136	경북 포항시 신항 제3부두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
137	전남 해남군 북평면 공유수면 매립지	전남도	"
138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공유수면 매립지	전북 군산시	'14.2.24
139	경북 포항시 남구 삼정하내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
140	경북 포항시 북구 이가리항내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
141	울산 남구 황성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남구	'14.5.16
142	경남 거제시 사등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거제시	"
143	충남 남포지구 부사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보령시, 서천군	'14.6.16
144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창원시	"
145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지구 친수공간 매립지	인천 중구	"
146	경기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
147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당진시	'14.6.16
148	경북 포항시 흥해읍 용한리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포항시	"
14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송도·연도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창원시	"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3.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150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공유수면 매립지	경남 하동군	"
151	부산 해운대구 미포항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 해운대구	"
152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경주시	"
153	울산 남구 황성동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남구	"
154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공유수면 매립지	경북 울진군	'14.8.25
155	울산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남구	"
156	인천 중구 중산동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157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공유수면 매립지	충남 당진시	"
158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미등록지	부산 해운대구	'14.12.15
159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동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 남구	"
160	울산 남구 황성동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 남구	"
161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시장	'15.4.13
162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인근 등록 누락지	경상북도	'15.6.22
163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구만리 인근 등록 누락지	경상북도	"
164	경북 울진군 후포면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15.8.31
165	인천 옹진군 연평면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166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167	인천 옹진군 백령면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168	시화지구 간척농지 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지	농림축산식품부	"
169	경북 포항시-영천시 경계 미등록지	경상북도	'15.10.26
170	충남 서산 대산항 국가항만 공유수면 매립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171	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15.10.26
172	충남 아산 인주면 공세리 일원 미등록지	충청남도	"
173	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남도	"
17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일원 등록 누락지	충청남도	"
175	전남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일원 등록 누락지	전라남도	"
176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지선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
177	인천 중구 운북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178	전북 군산시 소룡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179	새만금 1·2호 방조제 공유수면 매립지	농림축산식품부	"
180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공용부두 일원 매립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15.12.21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181	부산 영도구 동산2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광역시	"
182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193 인근 매립지	울산광역시	"
183	전북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전라북도	"
184	전남 해남군 및 영암군 공유수면 매립지 일원	농림축산식품부	"
185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 매립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186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187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일원 매립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188	전남 해남군 문내면 일원 매립지	전남 해남군	"
189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일원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190	인천 송도 10공구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구간 매립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191	인천 송도 10공구 신항 바다섬터 구간 매립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192	울산 남구 용연동 외항강 일원 매립지	울산광역시	2016.2.22
193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소리 590-58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대전지방해양수산청	"
194	인천 연수구 송도동 297 아암물류2단지 서측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195	새만금산업단지1·2공구매립지	전라북도	2016.4.25
196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	인천광역시	"
197	울산 남구 남화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198	인천 중구 을왕동 산143번지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199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1344번지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200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1-1번지 일원 등록누락지	옹진군	"
201	인천 서구 오류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6.8.22
202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03	충남 당진시 안섬지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
204	충남 보령시 오천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
205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206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광역시	"
207	인천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208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09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남도	"
210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2016.10.17
211	경남 거제시 능포동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남도	"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주요 운영절차 및 운영상 유의점

연번	안 건 명	신청기관	의결일
212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21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옹환리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14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215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라남도	2016.12.12
216	부산 남구 용호동 전면해상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광역시	2017.2.13
217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북도 영덕군	"
218	경북 울릉군 저동항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19	울산 북구 어물동 전면해상 매립지	울산광역시	"
220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457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2017.6.26
221	인천 서구 오류동 1582-4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222	인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일원 매립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23	충남 서천군 흥원항 및 홍성군 남당항 일원 매립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224	충남아산시영인면백석포리일원등록누락지	충청남도	"
225	충남 보령시 오천면 삼시도리 1045-1 일원 매립지	충청남도	"
226	울산 남구 황성동 전면해상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27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
228	인천 서구 경서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229	경기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2017.8.28
230	충남 서산시 팔봉면 호리 621-1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
231	전남 해남군 북평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라남도	"
232	인천 옹진군 영흥면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233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매립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7.10.23
234	전북부안군변산면일원공유수면매립지	전라북도	2017.12.18
23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옹환리 일원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36	전북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일원 등록 누락지	전라북도	"
237	경기 화성시 우정읍(화옹지구 2,3공구) 일원 매립지	농림축산식품부	"
238	전남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전라남도	"
239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40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산 17번선 일원 매립지	충청남도	"
241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내항관리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2018.2.26
242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자동차관리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연번	안건명	신청기관	의결일
243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인천광역시	"
244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및 미등록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245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
246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
247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장암리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18.6.18
248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49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여남동 일원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북도	"
25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일원(육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기도	"
251	충남 보령시·홍성군 홍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농림축산식품부	2018.10.22
252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연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
253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광역시	"
254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2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북도	2018.12.17
256	경기도화성시서신면·마도면인근공유수면매립지등	농림축산식품부	"
25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인근 등록누락 토지	경기도	"
258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삼시도리인근공유수면매립지	충청남도	"
2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우봉리360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울산광역시	"
260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5공구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	농림축산식품부	2019.2.18
261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개야도리인근공유수면매립지	군산시	2019.4.15
262	전라북도군산시소룡동인근공유수면매립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263	경상남도거제시두모동인근공유수면매립지	거제시	"
264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265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019.8.29
266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267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전라북도	"
268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인근 등록누락토지	충청남도	"
269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 및 남구 구룡포읍 삼정리 인근 공유수면 매립지	경상북도	"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3.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03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1) 개요

❖ 개념

- 동일 시·도내의 기초 자치단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
-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조정(이 경우 그 취지를 당사자에 알려야 함)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제86조, 제94조

❖ 구성

- 위원장 포함 11인 이내, 시·도지사 소속
- 위촉직(6인) : 위원장 및 위원(임기3년, 연임 가능), 시·도지사가 임명·위촉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당연직(최대 5인) : 조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운영

- 위원장 포함 7인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의결
- 중분위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을 심의 운영
※ 지방분쟁조정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예시) III-11
지방분쟁조정
위원회 조례

❖ 연 혁

-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

2) 절차별 추진 내용



1. 당사자 신청(시·군·구 또는 그 장)

- 동일 시·도내 기초 자치단체(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 있는 경우
- 신청시 구비서류(신청기관)
 - 안건명, 신청기관 및 피신청기관, 청구목적 및 조정 필요성, 이견내용, 기타 첨부서류 등
- 신청사실의 통보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일방이 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당사자에 신청사실의 통보 및 지체없이 지방분쟁조정위에 회부

※ 시·도지사의 직권조정

-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함
-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
- 권고기간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 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II.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제도

2. 지방분쟁조정위 심의·의결

-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최종 수렴하여 심의·조정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
- 심의 조정 결과 결정문 작성
 - 결정문에는 안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취지, 이유, 의결일시를 기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날인
-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 보고 후 비치
 -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및 주요내용을 작성

3. 결정사항 통보

- 지방분쟁조정위 조정 결정사항은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4. 이행계획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정결정사항 이행 및 조정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작성, 시·도지사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조정결정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
 - ※ 중장기 소요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시·도지사에 보고
- 시·도지사는 지방분쟁조정위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킨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을 부담시킬 수 있음

조정결정사항 불이행시

❖ **직무이행명령(지방자치법 제170조)**

- 시·군·구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직무이행을 명령
- 직무이행 명령 불이행시 행정 대집행 등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

❖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 즉시 통보 및 보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
 -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거나 행·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시·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례 ('19. 9월 기준)

자치 단체	분쟁사례명	분쟁당사자	의결내용
인천	개발제한구역내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관련	연수구↔남동구	조정('04.5)
경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승계	남양주시↔양주시	조정('03.10)
	하천점용 불허가	동두천시↔연천군	조정('06.10)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 폐쇄	양주시↔의정부시	기각('06.10)
	광명 봉안당 건립	안양시↔광명시	기각('07.7)
	용인수지지구 위탁하수처리비 산정	용인시↔성남시	조정('08.6)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명칭변경	평창군↔강릉시	취하('07.12)
전남	울촌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구역 조정	광양시↔순천시	각하('03.12)
경남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용	진주시↔사천시	조정('01.1)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 ◆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에 의거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는 강행규정이므로,
 - 명칭과 사무를 달리한 다른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거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에 위배
- ◆ 이와 함께, '○○○ 시정조정위원회'(14명, 전원 당연직) 및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위원수 30명)에서 사무를 처리하거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방법 등의 규정에 위배

◇ 위원회 임기 만료 후 차기 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는 등의 경우

- ◆ 시·도의 위촉직 위원 미위촉 등에 의한 위원회 구성을 지연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에 위배
- ◆ 재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계속 관리하는 경우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7항에 위배

PART III



III

참고자료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협력·분쟁조정 규정
2. 사무위탁 협약체결서, 관리조례
3. 행정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 행정협의회 규약
5.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6. 지방자치단체조합 폐지 규약
7. 조합해산 신고서
8. 행정협의회조정위원회 운영세칙
9. 위원회 조정 신청서
10.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11.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1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12-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3. 국내·외 각종 분쟁조정 관련 제도
14. 민간 관련 분쟁조정 제도 및 갈등관리 기관



1.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협력·분쟁조정 규정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p>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 지적공부(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 4.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소관청(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한다)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 	<p>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p> <p>제3조(관할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p> <p>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⑧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대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p> <p>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p> <p>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調整)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p> <p>제85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① 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은 분쟁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p>

III. 참고자료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에 대하여 결정을 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의 조정결정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조정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70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1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회부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의결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6조(이행계획의 보고) 법 제148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행을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p> <p>①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p>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p>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p> <p>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15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p>	<p>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49조 제5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환경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p> <p>제88조의2(위원의 해촉)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9.]</p> <p>제89조(간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제90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p>

III. 참고자료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1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p>	<p>로 구성한다.</p> <p>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같은 수로 한다.</p> <p>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1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에게 간사의 사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p> <p>제92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3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94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26조의2, 제87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p> <p>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행정협의회</p> <p>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p>	<p>제95조(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p> <p>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p>

III. 참고자료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제153조(협의회 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54조(협의회 의 규약) 협의회 의 규약 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 이 포함 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 의 명칭 2. 협의회 를 구성 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 가 처리 하는 사무 4. 협의회 의 조직 과 회장 및 위원 의 선임 방법 5. 협의회 의 운영 과 사무 처리 에 필요 한 경비 의 부담 이나 지출 방법 6. 그 밖에 협의회 의 구성 과 운영 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 <p>제155조(협의회 의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의회 는 사무 를 처리 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장 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 한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다.</p> <p>제156조(협 의 사항 의 조정) ① 협의회 에서 합의 가 이루어 지지 아니 한 사항 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장 이 조정(調整) 요청 을 하면 시·도 간 의 협 의 사항 에 대하여 는 행정 안전 부장관 이, 시·군 및 자치 구 간 의 협 의 사항 에 대하여 는 시·도지사 가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되</p>	<p>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p> <p>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 지방자치단체 의 장 은 법 제 152조 제1항 에 따라 협의회 를 구성 하면 1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 의 사항 을 보고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회 의 명칭 2. 가입 한 지방자치단체 명 3. 구성 목적 4. 구성 일자 5. 협의회 의 규약 사본 <p>제98조(회장) 법 제153조 제1항 에 따른 협의회 의 회장 은 1명 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 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 을 때 에는 협의회 의 규약 에서 정 하는 바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할 자 를 선임 한다.</p> <p>제99조(회의) ① 협의회 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 한다.</p> <p>② 정기 회의 는 상·하반기 로 나누 어 연 2회 소집 하고 임시 회의 는 규약 에서 정 하는 바 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 단체 의 장 이 요구 할 때 에 회장이 소집 한다.</p> <p>③ 행정 안전 부장관 이나 시·도지사 는 개최 할 필요 성 이 있다고 인정 되는 협의회 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 원 인 경우에는 행정 안전 부장관 이, 시·군 또는 자치 구 가 구성 원 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가 그 개최 를 권고 할 수 있다.</p> <p>④ 회장은 회의 가 있 을 때 마다 협의회 의 안건 을 준비 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 장 에게 미리 배포 하여야 한다.</p> <p>⑤ 협의회 를 개최 한 때 에는 회의록 을 작성 하여야 한다.</p> <p>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 에 시·도가 구성 원 인 경우에는 행정 안전 부장관 에게, 시·군 또는 자치 구 가 구성 원 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 을 보고 하여야 한다.</p> <p>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 는 그 협의 의 사항 에 관하여</p>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p> <p>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p> <p>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p> <p>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p> <p>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p> <p>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p>	<p>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p> <p>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III. 참고자료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p> <p>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p>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 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p> <p>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p>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p> <p>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회의 의장 <p>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 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p>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p> <p>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 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p>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p> <p>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104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05조(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협의조정 절차)</p> <p>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 신청은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서면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야 한다.</p> <p>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p>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조정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06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07조(실무위원회)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에 앞서 당사자 간의 긴밀한 협조 및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법제처차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시장·부지사가 된다.</p> <p>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08조(간사)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p> <p>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109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p>

Ⅲ. 참고자료

지 방 자 치 법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p>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p> <p>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10조(준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6조의 2, 제87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로, "소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p> <p>제111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p>제112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代執行)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170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2. 사무위탁 협약체결서, 관리조례 (예시)

예시1

하수처리업무에 관한 위·수탁협약서

○○○○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도 ○○○시(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갑'의 ○○물재생센터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과 '을'이 공동 시행한 ○○·○○택지개발구역의 발생하수 중 '을'의 관할 구역인○○○ ○○동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갑'의 ○○물재생센터(이하 '물재생센터'라 한다)에 유입처리하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의 범위 및 내용) ① '갑'은 '을'의 관할 구역인 ○○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1,100㎥/일을 '갑'의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한다.

② '을'은 '갑'의 물재생센터로 유입되는 '을'의 하수량 1,100㎥/일에 대하여 제3조와 제7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갑'의 물재생센터 건설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한다.

제3조(시설비 부담) ① '을'은 '갑'의 물재생센터 및 차집관거에 대한 건설비로 물재생센터 총 시설용량 (171만㎥/일) 중 '을'의 발생하수량(1,1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② 현재 시행중에 있는 고도처리시설(88만㎥/일)과 시설현대화사업(25만㎥/일),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의 건설사업비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 총 시설용량(159만㎥/일)중 1,1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을'이 부담할 시설비의 산정방법 및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재생센터, 차집관거, 기존 고도처리시설 등 기설치 완료된 시설(준공 이후로부터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 시설별 총 투자비 × 1,100㎥/171만㎥
2.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고도처리시설(88만㎥/일) 및 시설현대화 사업(25만㎥/일),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 사업별 총 사업비 × 1,100㎥/159만㎥

3. 시설부담금(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시설부담금 계	연도별 시설부담금		분담비율
		0000년	0000년이후	
계	943,557	784,452	159,105	
중량물재생센터(기존시설)	615,928	615,928	-	0.06433%
중량천 좌안 차집관거	93,292	93,292	-	0.24116%
고도처리, 현대화, 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진행 중 사업)	234,337	75,232	159,109	0.06918%

④ ‘을’은 제1항내지 제3항의 시설비 외에 향후 하수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과 기타 하수처리에 필요하거나 주민 민원 등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여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도 물재생센터 총 시설용량(159만^m³/일) 중 발생하수량(1,100^m³/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조(시설비 납부방법 및 시기) ‘갑’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업별 부담금 부과 시 ‘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을 ‘을’과 사전 협의하여 고지하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지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초과하수량에 대한 시설비 부담) ‘을’이 배출하는 연간 하수량이 2010년 계획하수량(일 최대 기준 1,100^m³/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한 시설비 부담에 관하여 ‘갑’과 ‘을’이 상호 재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시설비에 대한 정산) 제3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시설부담금은 각 단위 사업별로 최종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불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추가납부 또는 환불한다.

제7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물재생센터 및 차집관거의 유지관리비는 당해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총 경비(시설의 감가상각비 포함 한다)를 말한다.

② ‘을’이 부담하는 유지관리비는 ‘갑’의 결산서에 의한 물재생센터의 전년도 1^m³당 유지관리비에 제8조에서 정한 ‘을’이 배출한 하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을’은 필요시 ‘갑’의 결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은 매 월분 유지관리비를 분기별로 분기 익월 말일까지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유입하수량의 계속) ① '을'은 배출하수량을 계속하기 위해 토출구마다 유량계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와 시기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갑'이 유량계의 보정 등 관리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을'의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이 배출한 하수량의 산정은 ○○물재생센터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갑'과 '을'이 각각 측정하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갑'과 '을'이 측정한 하수량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갑'과 '을'이 측정한 값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소유권) ① '갑'의 물재생센터 및 관할구역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고 '을'의 관할구역 내 '을'이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을'에 귀속된다.

② '갑'과 '을'의 관할구역내 설치된 차집관거 및 우·오수관거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 책임은 제①항에 의한 소유권을 가진 시에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이 협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과 '을'은 해지사유, 해지일 등을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지사유가 '갑'의 귀책사유일 때 '갑'은 '을'이 별도 물재생센터를 설치할 때까지 제2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일 때 '을'은 해약일 이전에 '을'의 관할 구역 내 별도의 물재생센터를 갖추어야 하고 '을'이 '갑'에게 납부한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협약의 해석 등)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의 해석에서 당사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협약일(상호 서명을 완료한 날)로부터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여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이 협약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월 00일

‘갑’ ○○○시 (주소)
시 장 ○ ○ ○

‘을’ ○○○시 (주소)
시 장 ○ ○ ○

예시2

○○○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시·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도 관계공무원과 당해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③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처리의 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휘·감독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재위임·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 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3.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제3조(회의참석) ①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②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군·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 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약)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양식(예시) >

○○○ 행정협의회

【담당자명 : 시 과 주무관 (☎)】

명 칭			구성일	
구 성 지 자 체 명			중심 지자체명	
구 성 목 적				
구 성 절 차 (일자)	규약제정	지방의회 의결	규약의 고시	

붙임 ○○○ 협의회 규약(업무협약서) 1부. 끝.



4. 행정협의회 규약 (예시)

○○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륙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1. ○○도 ○○군
2. ○○도 ○○시
3. ○○북도 ○○시
4. ○○북도 ○○군
5. ○○북도 ○○군
6. ○○북도 ○○군
7. ○○북도 ○○시

제3조(협의회 사무소)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둔다.

제4조(협의사항) 본 협의회는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 문화, 관광, 교통 등 분야별 지역 연계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 화합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민간단체 포함)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전개
5. 지역 농·특산물 공동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은 ○○도 ○○군수, ○○도 ○○시장, ○○북도 ○○시장, ○○군수, ○○군수, ○○군수, ○○북도 ○○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회의운영의 기록관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의장) ① 의장은 ○○북도 ○○시장, ○○도 ○○군수, ○○도 ○○시장, ○○북도 ○○군수, ○○군수, ○○군수, ○○북도 ○○시장 순의 윤번제로 하며, 최초 의장은 ○○시장이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전체 위원이 참석한다.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한다.

④ 의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결과를 관계 위원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결과 처리) 본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은 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사항의 조정)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협의방법)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개최를 요구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안건 의결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대리인에게 토의·표결 권한을 부여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과 안건 관련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안건 중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이 속하였거나 회의를 소집한 위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업무담당 실·과장이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된다.

제12조(경비부담)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제13조(사무 인계인수) 의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의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규약개정) 회원 전원이 필요로 하여 찬성하면 본 규약을 제정(개정)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한다.



5.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예시)

예시1

○○○○○ 조합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시 및 ○○○도가 대중교통중심의 ○○○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은 ○○○○○○○(이하 "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① 조합은 ○○○○시·○○○○시 및 ○○○도(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를 구성원으로 한다.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조합의 사무소는 ○○시 ○○구 ○○○로 99에 둔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 ○○○ 교통정책의 협의·조정예 관한 사무
3.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계하는 도로·철도계획의 협의·조정예 관한 사무
4. ○○○ 광역버스에 관한 사무
5. ○○○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관한 사무
6. ○○○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사무
7. ○○○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 조합회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 5인, ○○○○시 3인, ○○도 5인, ○○○○부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조합원의 교통업무 담당 국장 각1인
2. 조합원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1인
3.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시 3인, ○○○○시 1인, ○○○도 3인
4. ○○○○부의 광역교통 담당 국장 1인
5. ○○○○○이 추천하는 교통관련 전문가 1인

④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자격을 가진 때까지 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보궐선출 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며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결위 또는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조합회의의 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4.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부담기준의 결정
5.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6.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7. 조합의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8.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한다.
- ③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④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사항이 제8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또는 2개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조합장은 ○○○○시, ○○○도, ○○○○시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무

제14조(경비분담) ①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이 조합회의의 구성 비율대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한다.

③ 조합의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기준은 조합회의에서 정한다.

제15조(예산편성 및 집행)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합원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합의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이에 따른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이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예시2

○○경제자유구역청 조합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민원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구성) 이 조합은 ○○○도와 ○○○도를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이 조합의 사무소는 ○○○도 관내에 두고, ○○○도 관내에 주민편의 및 민원처리를 위한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 이 조합은 ○○경제자유구역안의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1.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 내 ○○○도·○○○도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도지사·○○○도지사의 직접 수행사무
2.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리
3. 투자유치(외자유치를 포함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5. 외국인 생활 여건의 개선
6. 그 밖의 경제자유구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조합회의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 ② 조합회의는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 9명, ○○○도 9명, ○○○○부 1명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도와 ○○○도의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담당 실·국장 각 2명
 - 2. ○○○○장관이 추천하는 1명
 - 3. ○○○도와 ○○○도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각 2명
 - 4. ○○경제자유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5명
 - 5. 그 밖에 ○○○도지사과 ○○○도지사가 추천하는 5명(경제분야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2호, 제3호, 제5호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 ⑤ 제3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예에 따른다.
- ⑦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결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의장 및 부의장이 결위된 경우 보궐선출된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조합규약의 개정안
- 2.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3.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
- 4.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
- 5.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 6.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부담기준의 결정
- 7. 조합의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8.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III. 참고자료

제9조(조합회의의 운영)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사항이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개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행정사무감사 등) ① 조합회의는 매년 하반기에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기관

제12조(조합장)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도·○○○도 순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도지사나 ○○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다.

③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임명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④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3조(사무기구)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도와 ○○○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재 무

제14조(경비부담) 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행정구역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〇〇〇도와 〇〇〇도가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예산·회계 등)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재무회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조합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5월31일)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소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조합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 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의한다.

제5장 해산 등

제18조(조합의 해산) 「지방자치법」 제164조에 따라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간의 협의에 의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도의회, ○○○도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6. 지방자치단체조합 폐지 규약(예시)

○○·○○경량전철조합규약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광역시의회 및 ○○○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경량전철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행위나 조합에 대한 행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당 주무관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의 행위나 해당 주무관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모든 조합의 권리·의무는 해당 주무관청이 이를 포괄 승계하며, 공부에 표시된 조합 명의를 이를 해당 주무관청의 명의로 본다.

제4조(사무이관)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의 소관 사무는 주무관청이 이를 승계하고, 승계되는 사무는 해당 주무관청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조합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종전의 규약에 따른 조합회의 위원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7. 조합해산 신고서(예시)

조 합 해 산 신 고 서				처리기간
				없 음
해 산 조 합	① 명 칭			
	② 소재지			
	③ 청산인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청산인 주 소			
⑥ 해산 연월일				
⑦ 해산사유				
<p>지방자치법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의 규정에 의거 해산 승인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산당시의 조합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를 기재한 서류(조합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무상양여 합의결과 및 불용처리 내역) 각 1부. 3. 해산당시의 규약 1부. 4. 조합회의 회의록 및 안건(조합해산) 5. 지방의회 의결문 				



8.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0조에 의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의 신청) 지방자치법 제168조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 신청은 문서로서 하도 신청기관, 대상기관, 신청건명, 신청취지, 신청사유, 기타 중요사항(증거자료 첨부) 등을 기재한다.

제3조(대상사무) ①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된 분쟁대상사무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2.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송 계속중인 사항
3.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부적합 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취지를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서면의결)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제5조(대리참석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시 당연직 위원은 위임장(별표 1호 서식)을 지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협의·조정을 신청한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일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병합심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조정 신청된 수개의 분쟁이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한 것일 때,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정은 각 안건별로 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은 본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보고안건 등 경미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의2(주심위원 지정)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안건검토 및 당사자간 의견조율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실무조정회의)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자료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주재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및 결정문)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간사는 회의록과 결정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안건명,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결정문에는 안건명, 당사자, 주문, 청구취지, 이유, 의결일시를 기재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간사의 직무)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및 물품관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 ②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조정지원팀을 둔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실무위원회 포함)과 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p>※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별표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임장

【수 임 인】

○ 직 위 :

○ 성 명 :

【위임사항】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 . . .

【위임인】

○ 직 위 :

○ 성 명 : 인



9. 위원회 조정 신청서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안건명			
신청일자			
신청기관		담당부서	
피신청기관		담당부서	
청구목적 및 조정 필요성	조정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 ※ (예시) 대학운영비 차입이자 전체의 부담 주체를 A시로 결정하고자 함 00터널 유지관리권 소유 주체를 A사에서 B시로 변경하고자 함		
이건내용	AAAA(신청기관명)		BBBB(피신청기관명)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 안건 심의시 참고용		답변
	안건관련 법률에 분쟁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분쟁 해결로 조정의 실익이 없는 상황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첨부서류	안건과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가 없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지방자치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행협위)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중분위)

○○○○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I 개요 ※ 안건 관련 사업 또는 해당되는 사무에 대한 개요

□ 분쟁개요

- 안 건 명 :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관련사업 현황(예시) >

- 사업명/시행자 :
- 사업규모/사업비 :
- 사업위치/대상 :
- 추진근거 : 관련법/시행계획명 등

관련 사진지도 등

□ 주요 내용 ※ 기-승-전-결(분쟁) 요약하여 간략하게 기술

-
-

II 분쟁 경과 ※ 사업추진, 분쟁발생, 관련 협의내용 등 모든 경과 사항

- '00. 0. 0. : OO사업 기본계획 승인(OO부)
- '00. 0. 0. : AAAA-BBBB간 업무협약서 체결
- (예시: 협약 주요 내용, 당사자 등 간략히 설명, 분쟁 관련 조항 등)
- '00. 0. 0. : CCC 사유로 인한 사업시행자 변경 및 협약서 변경
- (예시: 변경사유, 주요 변경 내용 등)
- '00. 0. 0. : DDD시설 공사 착수
- '00. 0. 0. : 「EEEEEEEEEE법」 개정에 따른 'FFFF세' 폐지
- '00. 0. 0. : GGGG처리방안 관련 사항 검토 요청 공문발송(AA→BB)
- '00. 0. 0. : GGGG 관련 사항 수용 불가 공문 회신(BB→AA)

III 쟁점사항 및 당사자 주장 ※ 세부 쟁점사항별 당사자 주장

협약서 제00조 문언해석에 대한 이견

〈 AAAA(신청기관) 주장 〉

○

〈 BBBBB(피신청기관) 주장 〉

○

「00000법」상 사전 협의 절차 이행 여부

〈 AAAA(신청기관) 주장 〉

○

〈 BBBBB(피신청기관) 주장 〉

○

0000에 대한 법적 타당성 여부

〈 AAAA(신청기관) 주장 〉

○

〈 BBBBB(피신청기관) 주장 〉

○

IV 청구목적 및 조정 필요성

조정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기재

※ (예시) 대학운영비 차입이자 전체의 부담 주체를 A시로 결정하고자 함
00터널 유지관리권 소유 주체를 A시에서 B시로 변경하고자 함

○

○



10.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3조에 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중앙분쟁조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조정 신청된 수개의 분쟁이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되는 사안에 관한 것일 때, 또는 동일한 행정청이 행한 유사한 내용의 처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배부
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정리
3. 의결·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및 물품관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제5조(심의대상사무) ①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및 제148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분쟁조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사항
2.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 소송 계속중인 사항

3. 분쟁의 원인 또는 목적이 소멸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취지를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1(서면의결)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당사자간 이견이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상정) ①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신청사유
2. 주요골자
3. 분쟁개요 및 추진경위
4. 당사자 주장 및 관계기관 의견
5. 기타 참고사항(자료 첨부)

②분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분쟁조정 신청이 분쟁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호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1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안건과 관련하여 분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각 2명씩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3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④소위원회는 토의내용 및 기타 활동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주심위원 지정) 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안건검토 및 당사자간 의견조율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실무조정회의)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자료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행정안전부 국장급 주재의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대리출석) 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시 당연직 위원의 경우 관계공무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며, 위임을 받아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소위원회 포함)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1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아니오 ()
2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공사·계약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3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5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p>※ 위의 사전진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은 특정 안건 심의·의결시 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 별표 1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임장

【수 임 인】

○ 직 위 :

○ 성 명 :

【위임사항】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에 의거,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기인에게 위임함

20 . . .

【위임인】

○ 직 위 :

○ 성 명 : 인



11.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예시)

○○○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 상호간 분쟁사항
2.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자치행정국장·환경국장·교통건설국장·기획행정실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지방자치법」제14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도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갈등관리능력을 기관의 인사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및 공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영이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판단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2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심의결과와 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제19조에 따른 의장 1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장의 역할) 협의회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의 선임) 협의회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목적
2. 당사자의 범위
3. 협의회 의장의 선정
4. 진행일정
5. 협의의 절차
6. 협의결과문의 작성
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

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 절차의 공개) 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보칙

제24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①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갈등관리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 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2. 갈등의 예방·해결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보급
3.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①국무조정실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갈등관리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매뉴얼에 각 부처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보완할 수 있다.

제26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①국무조정실장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 할 수 있다.

⑤갈등관리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한 중앙행정

기관으로 구성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둔다.

⑥제1항에 따른 점검과 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2조제1호 및 별표와 관련된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다수 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조정특별위원회와 협의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자격제도의 도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29조(수당지급 등) ① 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또는 제2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12-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제3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영 제11조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무부
2. 법제처
3. 국무조정실
4. 통계청
5. 기상청
6. 검찰청
7. 특허청

제4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갈등관리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또는 국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제7조(지정신청) 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삭제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회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정사실의 통지) ①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기간) ① 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무조정실장이 과제 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갈등관리상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정책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국내·외 각종 분쟁조정 관련 제도

국내 분쟁조정제도

01 헌법재판소(권한쟁의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간 및 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내지 제67조)
-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청구인)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피청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침해를 주장 청구
 - ※ 개인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사례

- ❖ 아산국가공단(평택·당진)항만 개발관련 경계 분쟁
 - '00. 9. 7 당진군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 ※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진군에서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분쟁신청을 각하('01. 1.31)
 - '04. 9.23 권한쟁의심판결정
 -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공유수면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당진군 관할 구역임을 확인
- ❖ 울촌 제1산단(광양·순천) 관할권 경계분쟁
 - '03. 8.28 광양시에서 권한쟁의심판청구
 - ※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광양시가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분쟁신청을 각하('03.12.26)
 - '06. 8.31 권한쟁의심판결정
 - 평택·당진간의 권한쟁의심판결정('04. 9.23)을 재확인하여 1974년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인정, 광양시 관할구역임을 확인

0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근거

- 「환경쟁조정법」 제4조에서 제15조의2까지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4조까지

❖ 연혁

-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정('90. 8. 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91. 5.18)
-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97. 8.28)

❖ 위원회 개요

- 설치 : '62. 1.15
- 구성 : 15인(상임위원(위원장) 1, 비상임위원(위촉직) 14)
- 위원장 및 위원 15인은 환경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위촉
※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
- 기구 : 1국 5팀 (23명정도)
- 운영 : 당사자 신청(알선·조정·재정) 및 직권조정

❖ 주요 기능

- 1억원 초과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재정(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 조정(調整)
-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 지방위원회 기능 : 1억원 이하, 관할구역내 환경피해분쟁

❖ 조정(調整)의 종류 및 효력

● 재정(裁定) ※ 처리기간 9월

-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 ⇒ 재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후 60일 이내에 쌍방,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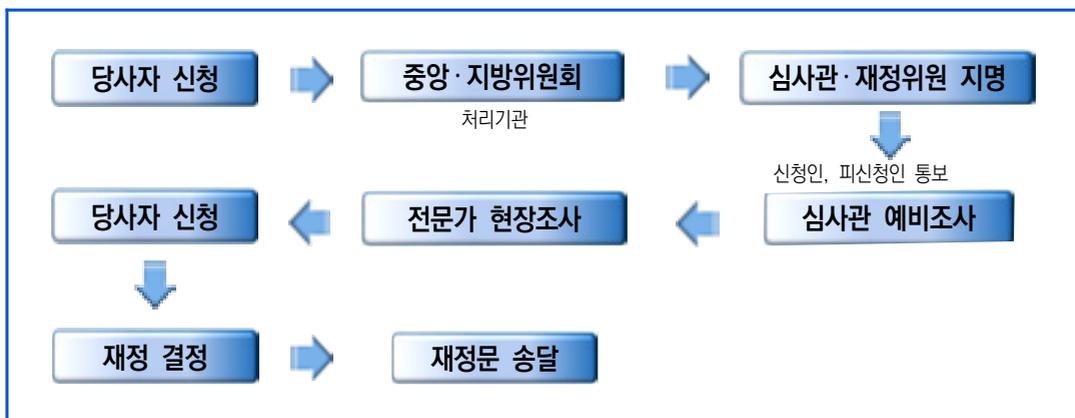
● 조정(調停) ※ 처리기간 9월

- 사실조사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 ⇒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알선(斡旋) ※ 처리기간 3월

-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 알선위원 중재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간 합의서 작성, 분쟁해결

❖ 처리절차(裁定的 경우)



III. 참고자료

03 국가물관리위원회

❖ 근 거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제6조까지

❖ 연 혁

- 「물관리기본법」 제정('18. 6. 12.)
-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19. 8. 27)

❖ 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대통령 소속
- 구 성 :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
 - * 위원장 : 2명(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 주요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 물분쟁의 조정
 -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04 중앙수산조정위원회

❖ 근거

- 「수산업법」 제88조에서 제90조까지
- 「수산업법시행령」 제73조에서 제78조까지

❖ 연혁

- 「하천법」 제정('53. 9. 9)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구성('63. 4.11)

❖ 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
- 구 성 : 19명 이내(당연직* - 위원장 포함 3명, 위촉직 5명, 추천직** 11명)
 - * 위원장 : 해양수산부차관
- 기 구 : 별도 사무기구 미운영

❖ 주요기능

- 어업별 또는 시·도간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외해양식어업면허 우선순위 심의, 손실보상 또는 분쟁 심의·조정
- 수산업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 「어장관리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국외 분쟁조정제도

01 일본의 분쟁처리위원회

구 분	국가지방계쟁처리위원회	자치분쟁조정위원회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250조의7에서 제250조의20까지 (총무성 소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법』 제251조에서 제251조의14까지 (총무성, 도도부현 소속)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관여에 의한 국가-지방공공단체간 분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지방공공단체 상호간 분쟁 조정 	
위원회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임기 3년, 연임 가능) ※ 총무대신이 兩議院 동의 후,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인(사건마다 임명, 임시기관) ※ 사안별로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임명(사전 협의)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신청 3인 이상(위원장 포함)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합의 ※ 해결전망이 없을 경우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동의로 조정중지 가능
심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관여행위(시정요구, 허가거부, 처분, 공권력 행사 등) 불복 부작위, 협의 불성립 등 	구체적 규정은 없음	
조정절차	당사자 신청 → 위원회 조사 → 결정사항 통보 → 조정안 권고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 상정 → 위원 임명 → 결정사항 통보 → 조정안 권고	
訴 제기 (고등 재판소)	소송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심사결과 또는 권고 불복 심사신청 90일 경과 후, 위원회 심사·권고가 없을 때 ※ 국가를 상대로 취소 또는 부작위소송 	좌 동 ※ 도도부현을 상대로 취소 또는 부작위소송
	제기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권고통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신청 90일 경과 후, 30일 이내 위원회 권고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02 미국의 갈등·분쟁 예방제도

- '70년대 공공갈등·분쟁이 심화되면서 법적 쟁송과 소송 빈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90년대 공공갈등·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 조정자, 중재자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수단(ADR) 제도화 추진

❖ 행정분쟁조정법('90년 제정)

- 행정기관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중립적인 중재자를 당사자간 합의로 선정
 - 중재자가 심문·조사 등 사실확인 과정을 거친 후, 대안을 권고하면 당사자가 수락하는 중재(Arbitration) 방식
 - 동법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 등 대안적 분쟁해결(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수단의 도입이 의무화
-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에 의한 분쟁해결정책 개발·공표, 분쟁해결 전문가 고위직 선임,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 등을 규정

❖ 규제협상법('90년 제정)

- 입법예고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상위원회'를 구성
 - '협상위'에서 합의안 수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위, 소송 등 이해관계자들의 규제저항을 최소화
 - ※ 연방환경청의 경우 주요 법규 중 약 80%가 공표 직후, 제소
- '협상위'(25인 이내) 구성 및 운영, 외부전문가 선정, 갈등영향분석 활용, 갈등해결지원센터 지원 등을 규정

❖ 행정분쟁해결법과 협상규칙제정법 비교

구 분	협상규칙제정법 (The Negotiated Rulemaking Act, 1996)	행정분쟁해결법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1996)
목 적	사전적 갈등예방	사후적 분쟁해결
성 격	이익대변적 성격	권익주제적 성격
적용대상	하위법규 제·개정	재판외 대안적 분쟁조정기법*이 가능한 사안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적용기법	참여적 의사결정	화해(Conciliation), 조정(Mediation), 합의촉진(Facilitation), 사실규명(Fact-finding), 중재(Arbitration), 기관 고충조사처리(Agency Ombudsmen)
적용단계	정책결정 이전단계에 적용	정책결정 후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 적용(이행단계, 이후단계)
적용원칙	협상과 타협	적은 비용, 빠른 해결
참여범위	직접적 이해관계자	직접적 이해관계자
지원기구	정부기관간 대안적 분쟁해소 실무그룹, 법무부 분쟁해결실	

03 공공토론위원회(CNDP, 프랑스)

❖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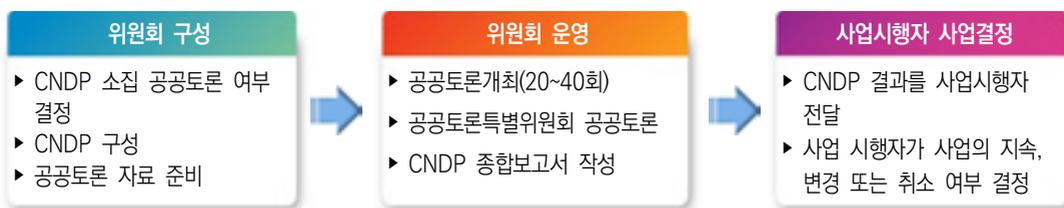
- 환경법, 적용명령, 도시화법 등 개별법에 주민참여와 토론을 규정
- 공공토론위원회는 1995년 바르니에 법에 따라 입법화

❖ 연 혁

- 환경개발부 산하에 구성('97)
- 독립적인 행정기관(독립행정청) 설립('02)

❖ 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또는 시설정비 사업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 구 성 : 21명 위원(위원장 1, 부위원장 2명 포함)
- 기능역할 : 사업 전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
- 운영실적('01~'09) : 88건(※이중 37건은 결정 사항 도출 성공)
- 운영절차



❖ 주요특징

- 사업 전 과정에서 대중 참여를 보장하며, CNDP의 최종의견은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은 아님
 - ※ CNDP의 권고사항에 대한 수용 혹은 불수용은 사업자의 결정에 의존
- CNDP 구성은 입법부, 사법부, 시민대표가 모두 참여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

III. 참고자료

04 덴마크 기술이사회(Danish Board of Technology)

❖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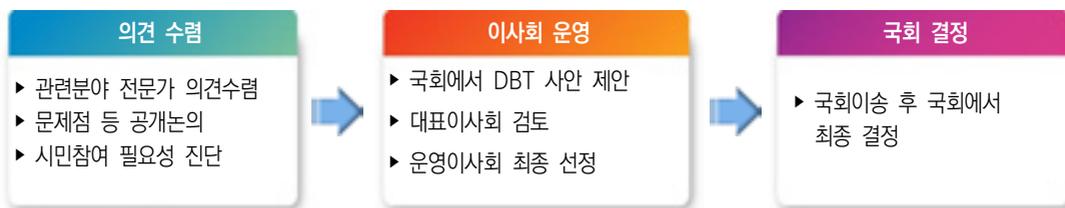
- Danish Act of the Board of Technology(1985)

❖ 연 혁

- 의회와 연계하여 법적근거를 가진 독립기구로 설립('85)
- 두 번의 확장기('88, '89)를 거쳐 영구조직으로 전환('95)

❖ 이사회 개요

- 설치목적 : 기술이 갖는 잠재적 영향과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한 모색
- 구 성 : 운영이사회(의장외 10명), 대표이사회(50명)
 - ※ 대표이사회에서 업무를 검토하고, 운영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 기능역할 : 기술평가 결과를 의회 및 정부의 정책결정자에게 전달
- 운영실적('92~'11) : 100건(※환경/에너지(31), 정보기술(14), 생명공학(10) 등)
 - ※ 해마다 100~150건의 주제 제안, 이 가운데 5~6건에 대해 평가 실시
- 운영절차



❖ 주요특징

- DBT 프로젝트의 주요기능은 정치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며, 기술의 도입이나 규제를 위한 입법을 유도하기도 함
- 활발한 대중토론이 DBT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토론참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도 중요시 함
 - ※ 최종 결과는 미디어를 활용해 정치인들에게 통지

05 영국의 시민협의제도

❖ 법적근거

- 서면협의 시행규칙(Code of Practice on Written Consultation, CPWC)

❖ 연 혁

- 시행규칙으로 내각부의 규제개혁실에서 제정·시행('00)
- 2008년 개정이후 현재 7개의 조항*으로 구성 운영

* 협의시기, 협의기간, 범위와 효과, 접근가능성, 부담최소화, 협의응답, 협의역량 규율

❖ 제도 개요

- 설치목적 : 정책과정에서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율
- 주요제도 : 서면협의 시행규칙(Code of Practice on Written Consultation, CPWC)*, 공공참여(Public Involvement, PI)**, 공공개입(Public Engagement, PE)***

* 서면협의시행규칙(CPWC) :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협의의 진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으며, 법률적 효력이나 시행의무 없음

** 공공참여(PI) : 정부와 시민간 쌍방향 관계 형성을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시민들의 자문을 구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는 과정

*** 공공개입(PE) : 정책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 핵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정책 이슈에 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거나 비용절감 방안 등 정책 전반에 논의하는 과정

❖ 주요특징

- 정책과정의 초기단계에서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시민협의제도는 갈등예방에 초점
-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민간부문 갈등기구들이 중재나 조정 역할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 분담

※ 민간부문 갈등조정기구 : ICARUS, ACAS(알선중재청), CPS(평화해결센터) 등

06 영국 이카루스(Icarus)

❖ 법적근거

- 「Planning Act」 등이 존재하나, 직접적으로 Icarus와 같은 민간 조직의 활동 근거가 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 연 혁

- 갈등관리전문가(Mediator)들이 모여 민간기구 설립('99)

❖ 조직 개요

- 설치목적 : 광범위한 정책분야 전문적 지원서비스 및 정책조언 제공
- 구 성 : 5명의 진행(facilitation) 전문가들이 동일한 책임을 갖는 수평적 구조
- 기능역할 : 공공기관이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이 아닌 EDD(Engage-Deliberate-Decide)** 방식을 활용토록 지원

* DAD 방식 : 소수의 의견만을 수렴하여 정책결정후 정책이나 사업 시행

** EDD 방식 :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참여, 문제를 규명하여 대안마련후 정책이나 사업 시행

● 운영절차



❖ 주요특징

- 정부정책이나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민간분야 제3의 갈등조정기구의 개입은 민간 반감을 최소화하여 정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
- 대중 참여로 정책이나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 또한 증진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정부기관에서 진행을 의뢰



14. 민간 관련 분쟁조정 제도 및 갈등관리 기관

갈등관리 민간기관

갈등관리 민간 기관명	기관 홈페이지	비 고
갈등문화연구원	www.dracon.kr	
공존협력연구소	http://www.ricc.or.kr	
단국대학교분쟁해결센터	http://www.ducdr.org	
사회갈등연구소	http://www.socon.re.kr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http://www.igr.re.kr	
한국갈등관리연구소	http://conflict.kr	
한국갈등관리학회	http://www.conflictstudies.or.kr	
한국갈등해결센터	http://www.adrcenter.or.kr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http://www.kadr.or.kr	
한국조정중재협회	http://www.ikama.or.kr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http://www.kipa.re.kr	

민간관련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기구명	업무분야	주요기능	근거법령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피해, 침해 등에 관한 분쟁	개인정보 관련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피해, 소비자 분쟁	소비자 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소비자기본법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재심청구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등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공제계약 분쟁, 자동차사고 피해자 손해사정 분쟁 등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이해 관계인 간 분쟁 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거래 관련 분쟁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간 금융 거래 관련 분쟁해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 기술유출 분쟁	기업 또는 개인간 산업기술, 기술 유출 등 분쟁 조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특허권 등 분쟁	산업재산권 관련 무효, 취소 등 분쟁 조정	발명진흥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주소, 국가도메인, 일반도메인 등 분쟁	인터넷 주소사용 관련 분쟁 조정	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 피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조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 러 두 기

- ① 이 업무편람은 주로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시·도별 자료 및 통계수치는 시·도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② 앞으로 업무편람 수록내용, 시·도별 자료 및 통계수치는 연말을 기준으로 보완·수정해나가겠으며, 보완·수정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제시하겠습니다.
- ③ 또한 업무편람 수록내용에서 있어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044-205-333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2019년 11월 발행

발 행 : 행 정 안 전 부

편 집 : 자치분권지원과

자치분권지원과장 한 치 흠

광역행정팀장 김 보 석

주 무 관 최 정 수

주 무 관 황 재 이

(044)205-3331

인쇄처 : 디자인 범신 (042)254-8737

지방자치단체
협력·갈등관리 업무 편람

